

청소년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진숙(수원여자대학교 교수)

국 문 초 록

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선택하며, 새로운 도전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어 자신만의 꿈과 끼를 찾고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청소년 성장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성인자원의 확대와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청소년 전문 인력의 역할과 책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요구된다. 또한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와 더불어 시대변화에 주목하면서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양질의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자격제도와 더불어 민간의 다양한 전문성이 청소년정책의 한 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및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일반적 현황의 이해를 통해 청소년 영역에서의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사안과 현황을 가늠해보고,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발급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자격증 및 민간자격제도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향후 자격제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및 청소년 자격제도 현황 전반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장과 학계 및 정책실무자 등 다수의 청소년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청소년 민간자격증 도입배경과 필요성, 민간자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청소년 자격제도 전반에 걸친 장단점을 파악 및 연구 방향과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청소년 지도자들의 요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기존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의 개선방안과 청소년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점차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청소년 활동영역에서 국가 및 민간자격 제도의 향후 전망과 쟁점사항을 가늠해 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주 5일제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정책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청소년지도자들이 점차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활동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증진과 질적 제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기존 청소년 활동 관련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실태 파악이 요청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영역에서의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사안과 현황을 가늠해보고,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발급되고 있는 국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및 민간자격제도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향후 자격제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영역에서의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자격제도 연구를 통한 향후 자격제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 자격제도 현황 전반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학계 및 정책실무자 등 다수의 청소년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현 청소년 국가자격제도의 쟁점사안을 살펴보고, 민간자격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분야의 민간자격 도입방안에 대해 가늠해 보고 국가 및 민간분야 전 영역에 걸쳐 현 청소년 자격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함.

- **양적연구:**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청소년 지도자들의 요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음. 표본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현장지도자로서 134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음.

3. 주요결과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1)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결과

-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77.7%)’가 높게 나타남.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1순위 응답에서는 ‘필기시험의 부활(29.7%)’이, 2순위 응답에서는 ‘현장실습 의무화(32.9%)’가 가장 높게 나타남.

(2)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결과

-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보유 현황에 관한 응답에서는 ‘없음(36.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1-2개(30.8%)’가 높게 나타남.
-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의 종류는 ‘특화프로그램 관련(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생활지도 및 상담관련(19.5%)’,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1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민간자격증 추가 취득의 필요성은 ‘필요하다(63.8%)’가 높게 나타남.
- 추가 취득이 필요한 이유는 ‘전문성 강화(56.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다양성 확보(31.3%)’가 높게 나타남.
- 추가취득이 필요한 민간자격증의 종류는 ‘특화프로그램 관련(30.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25.9%)’이 높게 나타남.
-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교육과 현장과의 연계체계 미비(29.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활용도 미비(21.5%)’가 높게 나타남.
-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 시 관리 및 운영주체에 관한 응답에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재단법인(36.9%)’이 가장 높게 나타남.

2) 정책제언

(1) 청소년국가자격제도 개선

- 청소년국가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
-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국가자격제도에서 고유활동과 전문활동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 민간자격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민간자격의 등록 영역을 확대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민간자격의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이 필요함.
- 민간자격의 사후관리가 중요함.
- 민간자격의 허용 범위를 잘 설정해야 함.
- 민간자격에 관한 현장의 욕구를 잘 반영해야 함.
- 민간자격의 질 관리가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II. 청소년활동 영역에서의 정책 환경의 변화	7
1. 청소년활동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양상	9
2. 청소년활동 영역에서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	11
III. 청소년관련 자격제도의 일반현황	15
1.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일반현황	17
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의 일반 현황	21
3. 소결 및 시사점	46
IV. 청소년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쟁점과 발전과제	49
1. 청소년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의 쟁점과 발전과제	51
2. 청소년 민간자격 제도의 쟁점과 발전과제	84
V. 청소년관련 자격제도 실태조사	97
1. 청소년관련 자격제도 조사개요	99
2. 청소년관련 자격제도 조사결과	101
3. 조사결과 요약	115
VI.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으로서의 자격제도 정책방향	117
1. 청소년국가자격제도 개선	119
2.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121
참고 문헌	125
부록.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133

표 목 차

〈표 III-1〉 우리나라 자격제도	18
〈표 III-2〉 우리나라 자격체계 및 현황	19
〈표 III-3〉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임·위탁 기관 현황 및 청소년 관련 자격현황	22
〈표 III-4〉 5년 전 대비 연령대별 여성 취득자 현황	24
〈표 III-5〉 2012년 연령별 등급별 국가기술자격 취득현황	25
〈표 III-6〉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직무분야별 자격취득자 현황('11년)	26
〈표 III-7〉 국가전문자격 현황(2013기준)	28
〈표 III-8〉 공인민간자격 연도별 신청 및 공인 현황(2013기준)	37
〈표 III-9〉 전체 공인민간자격의 개인특성별·연도별 신청자 현황(2009~2012년)	38
〈표 III-10〉 공인 민간자격 현황(2013년 12월 기준)	39
〈표 III-11〉 연도별 등록 민간자격 현황	44
〈표 III-12〉 '13년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모니터링 조사 결과	45
〈표 IV-1〉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	52
〈표 IV-2〉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54
〈표 IV-3〉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구제도 과목)	56
〈표 IV-4〉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56
〈표 IV-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57
〈표 IV-6〉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별 경력인정 비율	57
〈표 IV-7〉 “청소년이용권장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59
〈표 IV-8〉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	59
〈표 IV-9〉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60
〈표 IV-10〉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61
〈표 IV-11〉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과정	64

〈표 IV-12〉 2005년 이후 시행된 자격검정의 변경 내용	68
〈표 IV-13〉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주요 변화	68
〈표 IV-14〉 2013년 NCS 청소년지도-청소년활동 능력단위 내용	71
〈표 IV-15〉 NCS 청소년지도-평생경력개발 경로모형	72
〈표 IV-1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교수요목	73
〈표 IV-17〉 각 대학별 현장실습과목 커리큘럼	79
〈표 IV-1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	82
〈표 IV-19〉 사이버교육 승인 심사표	83
〈표 IV-20〉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운영기준	91
〈표 V-1〉 해당 기관에 근무한 햇수	102
〈표 V-2〉 연령별 분포	103
〈표 V-3〉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	104
〈표 V-4〉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1순위)	105
〈표 V-5〉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2순위)	106
〈표 V-6〉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보유 현황	107
〈표 V-7〉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의 종류	108
〈표 V-8〉 민간자격증 추가 취득의 필요성	110
〈표 V-9〉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제도가 필요한 이유	111
〈표 V-10〉 취득이 필요한 민간자격증 종류	112
〈표 V-11〉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113
〈표 V-12〉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주체	114

그림 목차

【그림 II-1】 교육부 자유학기제 기본계획	10
【그림 II-2】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체계	10
【그림 III-1】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 체계자료	21
【그림 III-2】 국가기술자격제도 등급체계와 청소년 접근성	23
【그림 III-3】 공인절차 및 운영구조	37
【그림 III-4】 점수제 공인민간자격의 지역별·학력별 신청자 비율(2009~2012년) ..	41
【그림 III-5】 점수제 공인민간자격의 성별·연령별 신청자 비율(2009~2012년) ..	41
【그림 III-6】 민간자격 등록제도 운영절차(교육부의 예)	43
【그림 IV-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51
【그림 IV-2】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과정	54
【그림 IV-3】 도입단계에서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제	65
【그림 IV-4】 1999년 개정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체계 ..	67
【그림 IV-5】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운영 시스템	94
【그림 V-1】 해당 기관에 근무한 횟수	101
【그림 V-2】 연령별 분포	102
【그림 V-3】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	103
【그림 V-4】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1순위)	104
【그림 V-5】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2순위)	105
【그림 V-6】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보유 현황	107
【그림 V-7】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의 종류	108
【그림 V-8】 민간자격증 추가취득의 필요성	109
【그림 V-9】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제도가 필요한 이유	110
【그림 V-10】 취득이 필요한 민간자격증 종류	111
【그림 V-11】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113
【그림 V-12】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주체	114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선택하며, 새로운 도전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개개인이 꿈과 끼를 찾고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만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입시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을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전용 시설과 공간의 확대 그리고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성인자원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빠른 시대변화와 청소년들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야 하며, 단순히 유행을 쫓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성장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성인자원의 확대와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청소년 전문 인력의 역할과 책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요구된다. 청소년에 관한 모든 것을 적절히 해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의 급수에 따른 역할 차이만 있을 뿐 영역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내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와 더불어 시대변화에 주목하면서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양질의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다양한 전문성이 청소년정책의 한 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민간자격은 소양자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성 높은 양질의 자격은 여전히 부족한, 양적 풍요 속 질적 빈곤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서비스분야 및 낮은 직무수준의 자격종목과의 관련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영역에의 국가자격이 신설되지 못한 수많은 분야에서 민간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자격신설 및 검정을 운영하거나 단순히 스펙 쌓기의 수단으로 자격이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교양수준의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운영에서 벗어나 수요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양질의 인력을 적절히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에게 양질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현장의 영역 확장, 그리고 더 나아가 내부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소극적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운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다른 측면에서 청소년지도사 양성에 대한 국가자격검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자격검정 시스템도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변화하는 청소년활동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되는 청소년지도사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지도사의 현장 전문성에 기반을 둔 역할확대와 기능강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양성제도인 국가자격검정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관련 일반자격 현황에 대한 검토와 전문영역에서의 국가자격과 아울러 민간자격 제도의 쟁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 1) 청소년 활동이 다양화 되고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 관련 국가자격증 및 청소년 민간자격증의 도입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 2) 현재 발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국가 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의 일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해 본다.
- 3) 청소년관련 전문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자격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사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 4) 청소년 자격제도가 청소년 활동정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과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영역에서의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자격제도 연구를 통한 향후 자격제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청소년 자격제도 현황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2차 통계자료와 유관 문헌을 고찰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학계 및 정책실무자 등 다수의 청소년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청소년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민간자격증 도입배경과 필요성, 민간자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민간자격 도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가 및 민간분야 모두를 아우르는 청소년 자격제도 전반에 걸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 방향과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실태조사

청소년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청소년 지도자들의 요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는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영역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증진을 위해 기존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의 개선방안과 청소년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 증진을 모색할 목적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표본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현장지도자로서 134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제 II 장

청소년활동 영역에서의 정책 환경의 변화

1. 청소년활동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양상
2. 청소년활동 영역에서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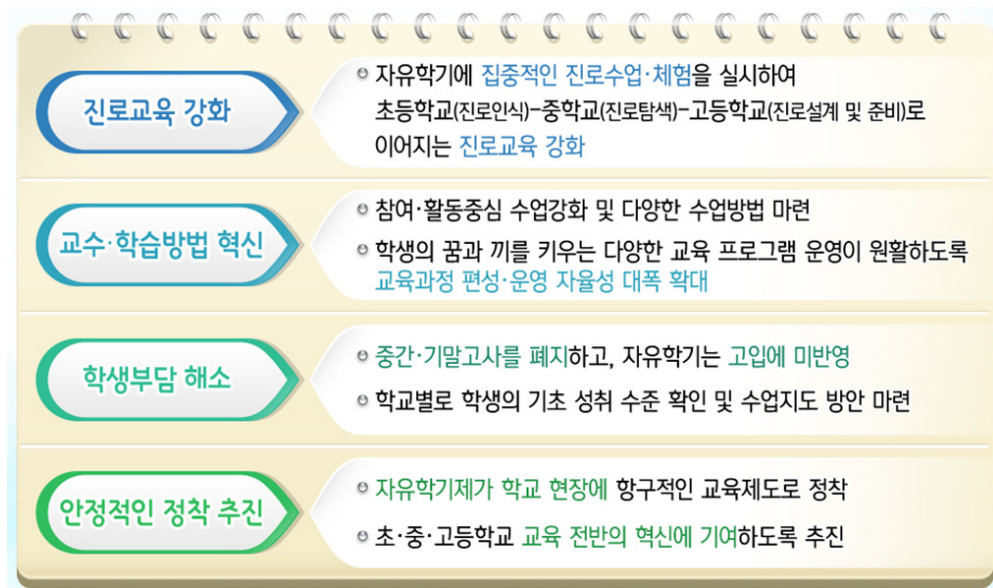
제 II 장

청소년활동 영역에서의 정책 환경의 변화

1. 청소년활동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양상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미래 노동력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재혼·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 구조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주5일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여가나 수면시간이 부족한 불균형한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안, 게임 몰입으로 인한 중독증상을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증가하였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러 중앙 정부부처에서 청소년활동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면서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자율활동 영역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자유학기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진로탐색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정책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청진기(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방과 후 및 주말을 활용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참조: https://freesem.kedi.re.kr/freesem/homepage/main/homepage_main_informMain.do

【그림 II -1】 교육부 자유학기제 기본계획



*참조: 2013년 서울시교육청 청진기 사업 리플렛

【그림 II -2】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체계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보다는 오히려 끌려 다니는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더 이상 기존의 청소년활동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영역의 청소년활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활동시설에서도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활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시설마다의 특화된 전문 활동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청소년활동시설을 확충하고 해양환경, 농업생명, 우주체험이라는 특화된 영역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다. 2013년에 개관한 3개의 국립청소년활동시설로는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가 있다. 각 시설은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고유활동영역과 함께 기관만의 특화된 시설, 프로그램과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는 기존의 고유한 청소년활동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해양환경체험활동을 통해 해양생명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미래 해양자원개발과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센터에는 해양환경체험관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고 해양안전훈련과 극지연구소 체험, 해양탐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센터의 지도력도 청소년지도사만이 아닌 해양환경체험활동이나 극지연구소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도 마찬가지이다. 이 센터는 기존의 청소년들의 생태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미래농업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청소년활동 이외에 안전한 먹거리 체험, 친환경 에너지 추출과 관련된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 인력도 청소년지도사 이외의 전문가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최근 설립된 국립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기존의 청소년활동 고유영역의 사업뿐 아니라 각 기관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2. 청소년활동 영역에서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청소년활동 정책은 특화된 청소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청소년활동거리나 지도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작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체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는 국가자격제도에는 청소년진로지도 교과목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들은 대학에서 진로지도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현장에서 오랫동안 청소년활동을 지도한 청소년지도사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노력을 별도로 기울이지 않는 한 청소년진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사업의 담당자와 중간관리자 혹은 기관장까지도 청소년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 체험센터의 경우에는 해양체험활동에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들이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전문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지도사들이 해양체험활동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낮다. 물론 현재 운영되는 형태처럼 청소년지도사와 해양체험활동 지도자가 함께 청소년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상적인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해양체험활동이 청소년활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가 세부 전문영역으로 해양체험활동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영역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청소년활동에 관련된 자격증은 국가자격증 이외에는 도입된 것이 없고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조차 2014년에 처음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소년지도사는 체계화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직업적 특성이 무엇인지, 수행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함양에 관한 연구들도 단지 몇 개의 연구가 있을 뿐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안권순, 2008; 김진화, 2001). 안권순(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개선, 지속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제도화, 배치기준의 조정, 전문연구 과정의 제도 보완, 산학협동 활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고, 김진화(2001)

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위 연구들이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대책을 큰 틀에서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최근의 청소년활동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청소년활동 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제 III 장

청소년관련 자격제도의 일반현황

1.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일반현황
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의 일반 현황
3. 소결 및 시사점

제 III 장

청소년관련 자격제도의 일반현황

1.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일반현황

1) 자격의 개념과 연구범위

자격(Qualification)이란 사전적으로는 “어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자격기본법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격은 단순히 국가자격, 민간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훈련 후의 졸업장뿐만 아니라 수료증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이다. 자격에 대한 개념적 구분은 광의로 해석가능하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자격의 개념은 일정한 검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증(certification)이나 면허증(license)을 의미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자격의 개념은 연구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협의적 개념의 자격을 적용하여 진행할 것이다. 협의적 개념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가 발급 및 시행주체가 되는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이 있으며, 민간이 발급주체가 되는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이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종목, 검정과목,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주체 등을 세세히 규정한다. 국가전문자격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국가(전문)자격의 검정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다. 반면 민간자격의 경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간자격의 경우 등록자격 가운데 우수한 민간자격을 선별하여 주무부처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공인민간자격과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민간이 자유롭게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록민간자격이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키로 한다. 아래의 <표 III-1>는 우리나라 자격제도를 짧게 요약한 것이다.

표 III -1 우리나라 자격제도

국 가 자 격 제 도	
국가기술자격제도	■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 예)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등
국가(전문)자격제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자격 예) 의사, 변호사, 정교사, 공인회계사 등
민 간 자 격 제 도	
민간자격공인제도	■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 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제도 예) 신용분석사, 점역교정사, 수목보호기술자, TEPS 등
민간자격등록제도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민간자격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의무 등록하는 제도 예) 미술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방과후지도사 등

2)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체계 및 특징

우리나라의 자격체계 및 자격제도는 일본과 유사¹⁾하나(김덕기·김상진, 2005) 여타 주요 국가의 자격제도와 비교해 보면 체계가 많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은 직무표준(competency standards)에 따른 교육·훈련이수에 대한 증명증서(certificates)가 발급되고, 이것이 자격증 및 면허증의 효력을 가진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검정 표준화된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증명서라기 보다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시험(test)후에 자격을 부여한다. 즉 과정중심이 아니라 시험검정 중심의 자격제도이다.

한국의 자격제도를 소관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고, 국가자격은 개별법에 근거하는 국가전문자격과 한국산업인력공단²⁾,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이 검정하는 국가기술자격(1973년 12월 제정)으로 나뉜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1997년 3월 제정)에 큰 틀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주로 민간기관(주로 각종 협회 등)이 자격검정·운영을 주관하는 민간자격은 단순히 등록만을 거친 등록민간자격과 등록자격 가운데 우수한 민간자격을

1) 일본의 자격제도는 김덕기·김상진(2005)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본의 자격제도에 대한 박종성·김현수(2004)의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제7권 제2호 29페이지에 잘 요약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개별 자격종목에 대한 명칭, 수여기관정보는 정태화 외(1998: 171-2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워드프로세서1·2·3급, 컴퓨터 활용능력1·2·3급 등 일부 자격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검정을 주관한다.

선발하여 법이 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일정한 수준의 질이 인정되는 자격종목에 한하여 주관 부처가 공인(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차 심사 대행하나 최종 인정은 소관 부처가 결정)해 주는 공인민간자격이 있다. 다음의 <표 III-2>는 운영 주체별 우리나라 자격체계 및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2 우리나라 자격체계 및 현황

구 분		자격 수	관련법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개별법상 국가자격	149	개별법령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공인중개사 등
	국가기술자격	512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소계	661	-	-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95	자격기본법 (교육부 외 14개 부처·청)	인터넷 정보검색사, TEPS 등
	등록민간자격	8,093	자격기본법 (교육부)	학교폭력상담사, 동화구연지도사, 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등
	소계	8,188	-	-

출처 : 이동임 외(2012), 국가자격 정보 체계화 방안

개별법의 국가자격증은 주로 서비스분야의 자격증 및 면허증으로 2013년 기준으로 149개 종목이 각 부·처·청·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자격증은 자격증 및 면허증의 발급주체, 검정주체, 등급체계, 합격자 결정기준, 응시자격 등이 개별법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정해지므로,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일관성은 없고 각 자격종목마다 매우 상이한 형태를 보인다. 이들 국가자격의 발급주체는 소관부처의 장관, 검정기관장, 또는 각 지방정부명의로 발급된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은 2013년 기준으로 512개 종목이다. 국가기술자격은 주관 부처별로 관리하나 제도의 총괄 운영 및 관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출제, 검정시험 등 시험관련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기술·기능계 직무분야는 크게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등급체제로 구성되며 서비스 분야는 기초사무와 전문사무분야로 구성되고, 직종별로 1급, 2급, 3급 등의 등급을 가진 종목도 있다.

한국 자격 제도의 특징은 첫째, 국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신명훈 외, 2000; 박종성·김현수, 2004; 박종성 외, 2005; 박종성 외, 2008).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되거나, 시장실패,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종목,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국가만이 검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³⁾.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활용되는 상당수의 자격증 및 면허증들이 국가전문자격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이며, 실제 노동시장에서 취업 등에 있어서 통용되는 민간자격증은 많지 않다⁴⁾.

둘째,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뉴질랜드(NZQF) 및 영국(GNVQ) 등과 같이 교육훈련이 연계된 자격(qualification)이 아니라 시험검정(test)에 의한 자격체계(qualification test)이다. 이것은 교육 및 훈련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국가의 경우 자격증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Skill Standards)에 기초하여 시행되나,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없으므로 교육훈련간의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정태화 외, 1997; 신명훈 외, 2000, 신명훈, 2000). 최근 교육 및 훈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점은행(credit bank)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표준에 의한 과정 이수가 곧 자격의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스페인, 호주 등과는 기본 골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격제도는 과정이수가 아닌 검정중심의 자격제도이다.

셋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NCEES(The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 자격종목 수와 직무범위 등이 협소하다. 반면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 가운데 가장 많은 자격수를 검정·관리하므로 일관성이 있는 검정시행이 가능하다.

넷째, 우리나라 자격종목들은 일관된 틀을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정태화 외, 1997). 이유로는 ① 자격증과 면허증의 불분명한 구분 ② 국가기술자격의 영역과 국가자격의 불분명한 구분(박종성 외, 2008) ③ 자격관련 용어의 구분 불명확⁵⁾ ④ 매우 다양한 자격 검정주체의 이해관계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3) 국가기술자격법 19조 2항 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제작기술사, 이용사,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 316개에 대해 오직 국가만이 검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부분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4) 자격기본법시행 이후 민간자격 취득자 및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자격취득자의 상당수가 전산기초, 한자와 같은 직무공통능력과 관련한 자격증이다. 이는 민간기관이 영리적 목적으로 자격검정을 시행하므로 응시대상자가 많은 직무분야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자격기본법이 추구하는 직업과 관련한 민간자격종목의 취득자는 많지 않으며 이들이 해당 자격증의 취득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는 낮다. 이러한 원인을 필자는 김상진(2004)에서 제시한 자격기본법 문제(자격기본법이 자격의 수준별 영역분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발생된 문제로 생각한다.

5) 정태화 외(1997)는 자격관련 용어의 혼란으로 인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나 정책 수립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의 일반 현황

1) 청소년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종목현황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초하여 관리·운영되는 제도로써 직무 및 역할에 따라 해당 담당기관이 구분된다.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은 고용노동부(구. 노동부)가 전반적 제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으며, 해당하는 자격종목의 운영 및 활용은 해당 직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개별 부처의 소관이나, 시험에 대한 검정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위탁기관이 검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 및 정책심의회 운영, 국가기술자격관련 검정체계 개선(등급, 분류, 종목 변경, 통폐합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부처는 주관 자격종목의 신설·변경·통합·폐지와 관련된 부처의견을 제시하여 관련된 사업법에 기초하여 취득자의 자격활용, 자격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국가기술자격은 제도운영, 종목신설 및 폐지, 자격 검정 및 사후관리, 자격취득자 활용 측면에서 다원화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 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대부분의 자격종목을 담당) 및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은 출제기준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시험문제의 검정계획, 출제, 검정시행, 시험채점과 자격증 발급 및 교부 등의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무를 수행한다.



출처: <http://www.q-net.or.kr>

【그림 III-1】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 체계자료

검정기관별 자격 종목 현황은 <표 III-3>과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67종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16종목, 대한상공회의소가 15종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종목, 영화진흥위원회 2종목, 한국콘텐츠진흥원 3종목, 한국광해관리공단 6종목의 검정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 2013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등 12개 자격종목의 시험검정을 다시 위탁하였다.

이들 검정기관에서 운영되는 자격종목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은 전산회계운용사 3급, 워드프로세스, 한글속기3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픽전문가와 각종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

표 III-3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임·위탁 기관 현황 및 청소년 관련 자격현황

검정기관	종목 수	자격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467	산업인력공단 주관 기능사 자격(지면관계상 큐넷 참조)
대한상공회의소	15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워드프로세스, 한글속기1·2·3급, 비서1·2·3급,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영화진흥위원회	2	영사산업기사·기능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6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한국콘텐츠진흥원	3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한국광해관리공단	6	광해방지기술사·기사,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광산보안기능사, 시추기능사
소계	512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2013), 2013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주 :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청소년이 취득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의미함.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학력과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림 III-2]에서 알 수 있듯 기능사의 경우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청소년들이 자격취득을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실무경력 1년만 있으면 산업기사, 실무경력 3년이면 기사, 실무경력 4년이면

기술사에도 도전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경력관리 및 직무능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



【그림 III -2】 국가기술자격제도 등급체계와 청소년 접근성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되며 자격증의 신설·변경·통합·폐지 등 자격검정 전반이 해당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따라서 다른 자격증과 비교하여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격검정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대부분이 기능 및 기술과 관련한 분야의 자격증으로 크게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으로 이뤄져있다. 해당 등급 가운데 기능사의 경우 청소년 취득자의 비율이 높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특성화, 마이스터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득한다. 따라서 자격의 활용성과 신뢰성 등의 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당수 민간자격의 경우 양적으로

훨씬 많은 검정 인원과 종목 수를 가질 수 있으나 입시용 자격이나 스펙관리 차원이므로 실제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검정수준도 낮으며 발급기관 또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국가기술자격에 있어서 청소년(19세 이하)의 비중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취득자의 수가 많이 감소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워드프로세스 2급 및 3급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표 III-4> 참조). <표 III-5>에서 알 수 있듯,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대부분이 기능사 등급과 서비스분야에 몰려있다. 국가기술자격의 전문서비스 분야는 정보화기초능력과 관련된 자격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취업과의 연관된 자격증은 각종 기능사이다. 기능사 등급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직무분야는 기계, 음식료품, 통신, 건축분야로 나타난다. 기계 및 건축분야의 취득자가 상당수가 남학생이며, 음식료품 및 통신의 경우 상대적 여학생 취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III-4 5년 전 대비 연령대별 여성 취득자 현황

구분	2008년		2012년	
	취득인원	비율(%)	취득인원	비율(%)
합계	378,759	100.0	204,698	100.0
19세 이하	160,569	42.4	49,872	24.4
20세~24세	76,265	20.1	61,725	30.2
25세~29세	44,292	11.7	23,069	11.3
30세~34세	28,259	7.5	15,314	7.5
35세~39세	32,293	8.5	16,782	8.2
40세~44세	20,188	5.3	17,567	8.6
45세~49세	10,791	2.8	10,474	5.1
50세~54세	4,727	1.2	6,501	3.2
55세~59세	1,118	0.3	2,793	1.4
60세 이상	257	0.1	601	0.3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13), 2013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구분	연도							
연령	합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서비스
전체	25,742,540	42,712	27,974	1,479,551	1,704,065	9,417,676	401,731	12,668,831
19세 이하	1,497,783	2	0	2	523	302,061	1	1,195,194
20-24	2,747,785	0	5	25,639	54,310	902,953	2	1,764,876
25-29	3,400,898	11	252	179,124	228,156	1,244,162	3,574	1,745,619
30-34	4,187,319	579	1,883	361,271	346,265	1,633,492	36,056	1,807,773
35-39	5,095,510	3,338	4,766	299,893	308,301	1,467,144	49,548	2,962,520
40-44	4,133,045	7,405	7,475	246,707	253,680	1,366,183	39,130	2,212,465
45-49	1,979,734	7,915	5,704	125,606	115,359	954,816	49,893	720,441
50-54	1,395,154	8,680	4,895	112,035	177,066	864,174	82,699	145,605
55-59	727,570	6,431	2,218	73,944	122,277	386,465	66,980	69,255
60-65	285,917	3,247	591	30,777	38,838	156,113	30,520	25,831
65세 이상	283,143	5,102	185	24,530	59,234	139,281	43,157	11,654
미상	8,682	2		23	56	832	171	7,598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13), 2013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표 III-6>에서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자격 취득자 현황을 보면 기능사 329,057명, 산업기사 42,157명, 기사 55,328명으로 기능사가 기사나 산업기사 취득자 수에 비해 월등히 많다. 직무 분야별 취득자가 가장 많은 것은 기계분야의 기능사 등급으로 92,754명이다. 이는 전체(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취득자 수 426,542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기능사 내 직무분야별 취득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계분야 92,754명, 음식료품분야 79,096명, 통신분야 34,772명 순으로 높으며 자격 취득자가 낮은 분야로는 광업분야 155명, 조선분야 361명, 해양분야 561명이다 (에너지분야, 교통분야 제외).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청소년을 지도하거나 상담하기 위한 자격은 없다. 대부분 기술 및 기능의 수준을 검정하기 위한 자격이기 때문이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가운데 기술사의 경우 습득한 기술을 재직자,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의 전반적 종목 현황 및 활용실태를 볼 때, 직접적으로 청소년 대상의 기술지도 및 상담과 관련한 자격종목은 없다.

표 III - 6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직무분야별 자격취득자 현황('11년)

직무분야 \ 등급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1,783	8,489	92,754
금속	667	786	4,175
화공	561	1,590	5,500
전기	7,561	2,593	9,309
전자	393	318	10,566
통신	1,179	643	34,772
조선	18	4	361
항공	1	328	2,178
토목	4,387	1,096	4,286
건축	2,722	1,131	13,460
섬유	20	486	1,906
광업	111	47	155
정보처리	17,211	15,426	5,011
국토개발	1,654	977	4,835
농림	1,737	792	5,141
해양	97	120	561
산업디자인	1,151	2,408	11,157
에너지	348		
안전관리	8,797	3,336	1,549
환경	3,212	807	816
산업응용	1,543	464	5,697
교통	175	8	
공예		91	1,509
음식료품		217	79,096
위생			34,263
합계	55,328	42,157	329,057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13), 2013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2) 개별 국가자격제도 및 종목현황 및 문제점

국가자격은 ‘자격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안보 등과 관련된 부분이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자격은 앞서 언급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부처소관의 국가자격으로 구분 된다. 개별 국가자격은 각각의 법이 추구하는 입법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행되며,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흔히 개별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에 대하여 국가전문자격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령, 관행, 학문에 있어서 통일된 명확한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면허(license)적 성격을 가지는 자격종목과 능력에 대한 자격증(certifica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은 지식(knowledge)나 기술(skills), 태도(attitude)로 요약되는 직무능력(competency)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규제된 직무의 수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면허는 의사, 변호사, 자동차운전면허 등이 있다. 개별 법령에 따른 개별 부처의 국가전문자격은 일정 직무영역에서 규제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면허의 경우 비교적 전문성이 높고 직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자격종목이 많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면허와 직업을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 회계사, 간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도선사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국가면허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시험이 이뤄지므로 청소년의 취득가능성 및 응시율은 매우 낮다.

반면, 국가자격 가운데 자격증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 사서, 보험중개사, 국내여행안내원 등이 그 예이다. 이들 자격증의 경우는 면허와 달리 직업규제성이 낮고, 해당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격취득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국가자격 149개 종목 가운데 면허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의 취득가능성이 없는 자격종목이며 일부 자격증의 유형에서 청소년의 국가자격취득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국가전문자격 가운데 청소년지도 및 상담과 관련한 국가자격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관련성이 가장 높으며, 그 외 정교사, 준교사, 한국어교원, 생활체육지도사, 보건교육사 등이 있다.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의 시험과목에 청소년심리, 상담, 지도방법론 등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험과목이 비교적 잘 설정되어 있으나, 다른 자격종목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검정에 있어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일부 자격종목의 경우 교육학적 내용(교육이론, 교수학습방법론 등)을 다루고 있어 청소년 지도, 상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III -7 국가전문자격 현황(2013기준)

연번	소관부처	응시자격	자격 명	등급 및 분야	근거 법
1	경찰청 (4)	-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
2		-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 특수, 대형, 보통, 소형 / 제2종 -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연습 - 1종보통, 2종보통	도로교통법
3		-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학과, 기능	
4		-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 검정원	단일등급	
5	고용 노동부 (4)	-	공인노무사	단일등급	공인노무사법
6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2급, 3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7		제한 없음*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보건법
8		제한 없음*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의학 분야, 산업위생 분야	
9	공정거래 위원회(1)	제한 없음*	가맹거래사	단일등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관세청 (2)	-	보세사	단일등급	관세법
11		-	관세사	단일등급	관세사법
12	교육과학 기술부 (8)	-	보건교사	1급, 2급	초·중등 교육법
13		-	사서교사	1급, 2급	
14		-	실기교사	단일등급	
15		-	영양교사	1급, 2급	
16		-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17		-	정교사	1급, 2급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2등급/4분야)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18		-	준교사	단일등급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단일등급/4분야)	
19		-	평생교육사	1급, 2급, 3급	평생교육법

연번	소관부처	응시자격	자격 명	등급 및 분야	근거 법
20	국방부(1)	-	군항공교통관제사	단일등급	군용항공기운용 등에 관한 법률
21	기획재정부(1)	-	세무사	단일등급	세무사법
22	국세청(2)	-	외국세무자문사	단일등급	
23		제한 없음*	주류제조관리사	1급, 2급	주세법
24	국토해양부(34)	-	건축사	건축사, 건축사보	건축사법
25		제한 없음*	공인중개사	단일등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6		제한 없음*	교통안전관리자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석도	교통안전법
27		제한 없음*	물류관리사	단일등급	물류정책 기본법
28		제한 없음*	감정평가사	단일등급	부동산가액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
29		-	기관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선박직원법
30		-	소형선박조종사	단일등급	
31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소형, 중형	
32		-	운항사	1급, 2급, 3급, 4급	
33		-	통신사	1급, 2급, 3급, 4급 / 전파통신급, 전파전자급	
34		-	항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35		-	의료관리자	단일등급	선원법
36		-	구명정수 ⁶⁾	단일등급	
37		-	택시운전자격	단일등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8		-	버스운전면허	단일등급	
39		제한 없음*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주택법
40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분야: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신호분야, 철도궤도분야 / 구분 : 설계, 감리, 시공 / 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철도안전법

연번	소관부처	응시자격	자격 명	등급 및 분야	근거 법
41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단일등급	
42		—	철도차량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철도장비	
43		—	경량항공기조종사	단일등급	항공법
44		—	부조종사	단일등급	
45		—	사업용조종사	단일등급	
46		—	운송용조종사	단일등급	
47		—	운항관리사	단일등급	
48		—	자가용조종사	단일등급	
49		—	항공교통관제사	단일등급	
50		—	항공기관사	단일등급	
51		—	항공사	단일등급	
52		—	항공정비사	단일등급	
53		제한 없음	감정사	단일등급	항만운송사업법
54		제한 없음	검량사	단일등급	
55		제한 없음	검수사	단일등급	
56		—	도선사	1종, 2종	도선법
57		—	화물운송종사자	단일등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8	국토 해양부 환경부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급, 2급, 3급	환경교육진흥법
59	금융 위원회 (4)	—	공인회계사	단일등급	공인회계사법
60		1차제한 없음	보험계리사	단일등급	보험업법
61		제한 없음	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	
62		1차제한 없음	손해사정사	제1종 손해사정사 / 제2종 손해사정사 / 제3종 손해사정사 - 대인손해사정사, 대물 · 차량손해사정사 / 제4종 손해사정사	

연번	소관부처	응시자격	자격 명	등급 및 분야	근거 법
63	농림수산식품부 (10)	-	수산물병관리사 ⁷⁾	단일등급	기르는 어업육성법
64		제한 없음*	경매사	청과, 수산, 축산, 화훼, 양곡, 약용작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65		-	농산물검사원 ⁸⁾	곡류, 특작·서류, 과실·채소류, 종자류, 잠사류	농수산물품질관 리법
66		제한 없음	농산물품질관리사	단일등급	
67		제한 없음*	환지사	단일등급	농어촌정비법
68		-	말조련사	1급, 2급, 3급	말산업육성법
69		-	장제사	1급, 2급, 3급	
70		-	재활승마지도사	1급, 2급, 3급	
71		제한 없음*	가축인공수정사	단일등급	축산법
72		-	수의사	단일등급	수의사법
73	대법원 (1)	제한 없음*	법무사	단일등급	법무사법
74	문화재청 (2)	제한 없음*	문화재수리기능자	22종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75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76	문화체육관광부 (14)	-	경주선수	경륜, 경정	경륜경정법
77		-	경주심판	경륜, 경정	
78		-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 1급, 2급, 3급	공연법
79		제한 없음*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진흥법
80		제한 없음*	국내여행안내사	단일등급	
81		-	국외여행인솔자	단일등급	
82		-	호텔경영사	단일등급	
83		-	호텔관리사	단일등급	
84		제한 없음*	호텔서비스사	단일등급	

연번	소관부처	응시자격	자격 명	등급 및 분야	근거 법
85		-	경기지도자	1급, 2급 / 54종목	국민체육진흥법
86		-	생활체육지도자	1급 - 운동처방분야 / 2급, 3급 - 42종목	
87		-	한국어교원	1급, 2급, 3급	국어기본법
88		-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도서관법
89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90	방송통신위원회(2)	제한 없음*	무선통신사	항공, 해상, 육상, 제한	전파법
91		제한 없음*	아마추어무선기사	제1급, 제2급, 제3급(전신급, 전화급), 제4급	
92	법무부(1)	-	변호사	단일등급	변호사시험법
93	보건복지부(35)	-	보건교육사	1급, 2급, 3급	국민건강증진법
94		-	영양사	단일등급	국민영양관리법
95		-	임상영양사	단일등급	
96		-	요양보호사	단일등급	노인복지법
97		-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사회복지사업법
98		-	약사	단일등급	약사법
99		-	한약사	단일등급	
100		-	한약업사	단일등급	
101		-	한약조제사	단일등급	
102		-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영유아보육법
103		-	응급구조사	1급, 2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4		-	물리치료사	단일등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05		-	방사선사	단일등급	
106		-	안경사	단일등급	
107		-	의무기록사	단일등급	
108		-	임상병리사	단일등급	
109		-	작업치료사	단일등급	

연번	소관부처	응시자격	자격 명	등급 및 분야	근거 법
110		—	치과기공사	단일등급	의료법
111		—	치과위생사	단일등급	
112		—	간호사	단일등급	
113		—	전문간호사	보건분야, 마취분야, 정신분야, 가정분야, 감염관리분야, 산업분야, 응급분야, 노인분야, 중환자분야, 호스피스분야, 종양분야, 임상분야, 아동분야	
114		—	간호조무사	단일등급	
115		—	의사	단일등급	
116		—	전문의	의사 전문의 26종 / 치과의사 전문의 10종 / 한의사 전문의 8종	
117		—	조산사	단일등급	
118		—	안마사	단일등급	
119		—	한의사	단일등급	
120		—	치과의사	단일등급	
121		—	위생사	단일등급	위생사에 관한 법률
122		—	장례지도사	단일등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3		—	언어재활사	1급, 2급	장애인복지법
124		—	의지·보조기기사	단일등급	
125		—	정신보건간호사	1급, 2급	정신보건법
126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2급	
127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2급	
128	산림청 (2)	—	산림치유지도사	1급, 2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129		—	산림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 - 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 산림공학기술자 - 특급, 1급, 2급 / 목구조기술자 - 목구조시공, 목구조관리 / 수목보호기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연번	소관부처	응시자격	자격 명	등급 및 분야	근거 법
130	소방 방재청 (3)	-	소방안전교육사	단일등급	소방기본법
131		-	화재조사관	단일등급	
132		-	소방시설관리사	단일등급	
133	여성 가족부 (2)	-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	청소년기본법
134		-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	
135	원자력안전 위원회 (7)	-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단일등급	원자력안전법
136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	단일등급	
137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면허	단일등급	
138		-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면허	단일등급	
139		-	핵연료물질취급자 면허	단일등급	
140		-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발전용원자로 가압경수로형 / 발전용원자로 가압중수로형 / 연구용원자로 / 교육용원자로 (4분야)	
141		-	원자로조종사면허	발전용원자로 가압경수로형 / 발전용원자로 가압중수로형 / 연구용원자로 / 교육용원자로 (4분야)	
142	중소 기업청 (2)	제한 없음*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분야, 재무관리분야, 생산관리분야, 마케팅분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3		제한 없음*	기술지도사	기계분야, 금속분야, 전기전자분야, 섬유분야, 화공분야, 생산관리분야, 정보처리분야, 환경분야, 생명공학분야	

연번	소관부처	응시자격	자격 명	등급 및 분야	근거 법
144	지식 경제부(1)	2, 3급제한 없음	유통관리사	1급, 2급, 3급	유통산업 발전법
145	특허청(1)	-	변리사	단일등급	변리사법
146	해양 경찰청(1)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 요트조종면허	수상레저 안전법
147	행정 안전부(1)	제한 없음*	행정사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법
148	환경부(2)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급, 3급	수도법
149		-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측정분석, 수질환경측정분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27개	-	149개 ⁹⁾	-	-

출처 : 이동임 외(2012), 국가자격 정보 체계화 방안에 제시된 표를 동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인용함.

주 : 소관부처별 자격 총계와 전체 자격개수가 일치하지 않은 점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소관이므로 부처별 자격 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체 자격개수에만 추가되었기 때문임.

제한 없음* : 사실상 제약이 되지 못하고 특정인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를 의미함. 상세한 사항은 <부록 1>참조

3) 공인민간자격제도의 종목현황 및 문제점

민간자격공인제도는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 확보와 사회적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신설과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공인제도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과정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인과 관련 주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의 글상자와 같다.

6) 2012년 5월 18일 자로 ‘구명정 조종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7) 2012년 7월 22일 자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 근거법에 포함되었다.

8) 2012년 7월 22일 자로 ‘농산물 검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9) 자격 명 리스트는 ‘김미숙 외 (2012)’ 참조.

[글상자 III-1] 자격기본법상의 공인관련 근거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운영하는 자격
 -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 ③ 민간자격의 공인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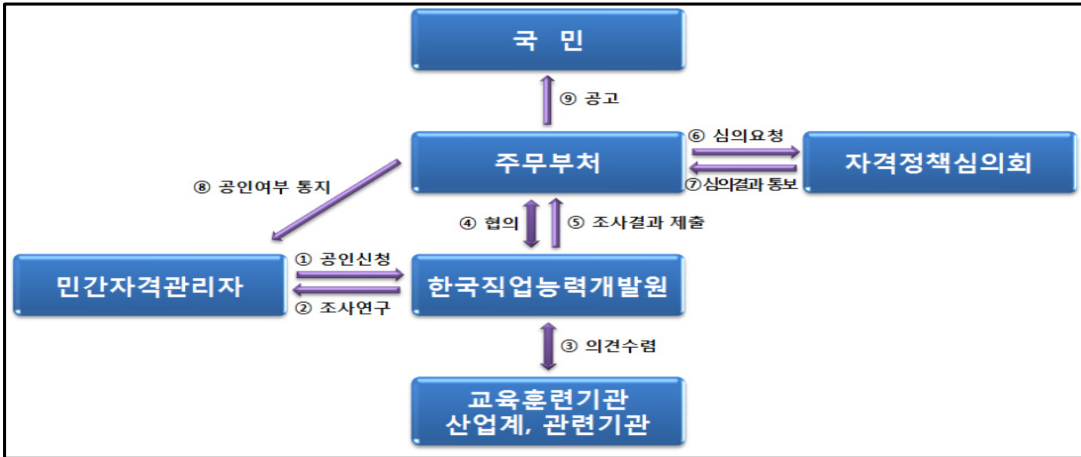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민간자격의 공인)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동 공인제도의 주요 목적은 첫째, 공인제도를 통한 민간자격 공인제도 활성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직업능력향상, 인력이동의 유연화, 능력사회 구축, 평생학습사회로의 발전을 추구하며,

둘째,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관리자들이 자격제도의 운영 틀을 갖추고 자격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자격 종목 및 자격관리자의 적정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인 민간 자격이 국가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절차 및 운영구조는 다음의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 공인절차 및 운영구조

공인민간자격은 2014년 기준 95개로 파악되며, 공인신청 자격종목의 대략 10개 가운데 1개 정도가 공인되고 있다(<표 Ⅲ-8>참조). 등록 민간자격의 가운데 공인을 신청하는 곳도 많지 않으며, 신청하여도 공인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등록민간자격의 상당수가 영세한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갖추어야 체계적인 검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Ⅲ-8 공인민간자격 연도별 신청 및 공인 현황(2013기준)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공인 신청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58	65	62	61		1,229
공 인	28	7	5	6	6	12	6	3	7	11	10	4	6	5		116
취소 및 기간종료	-	-	-	1	-	1	-	1	-	-	1	13	2	1	1	20
공인 누계	28	35	40	45	51	62	68	70	77	88	97	88	92	96	95	-

출처 : 이동입 외(2012). 2012 민간자격 통계연보

전체 공인민간자격 취득자의 개인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4년간 공인민간자격의 신청자 현황은 2009년 2,187천명에서 2012년 2,241천명으로 큰 차이는 없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민간자격 응시자수가 많으며, 20대 미만이 대략 48%로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학력별로 그 분포를 추정해보면, 고졸이하의 저학력 계층의 자격취득이 많다.

표 III-9 전체 공인민간자격의 개인특성별·연도별 신청자 현황(2009~2012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9,219,471(100.0)	2,187,754(100.0)	2,359,377(100.0)	2,431,270(100.0)	2,241,070(100.0)
성별	남성	4,265,451(46.3)	1,004,983(45.9)	1,094,359(46.4)	1,162,741(47.8)	1,003,368(44.8)
	여성	4,872,065(52.8)	1,168,375(53.4)	1,242,201(52.6)	1,253,669(51.6)	1,207,820(53.9)
	분류 불가	81,955(0.9)	14,396(0.7)	22,817(1.0)	14,860(0.6)	29,882(1.3)
연령	20대 미만	4,461,959(48.4)	1,055,295(48.2)	1,166,077(49.4)	1,142,123(47.0)	1,098,464(49.0)
	20대	3,033,127(32.9)	723,198(33.1)	763,780(32.4)	822,163(33.8)	723,986(32.3)
	30대	1,087,952(11.8)	268,779(12.3)	270,369(11.5)	308,161(12.7)	240,643(10.7)
	40대	411,615(4.5)	94,402(4.3)	102,782(4.4)	109,460(4.5)	104,971(4.7)
	50대	104,202(1.1)	22,003(1.0)	24,013(1.0)	24,020(1.0)	34,166(1.5)
	60대 이상	30,505(0.3)	6,856(0.3)	7,619(0.3)	7,458(0.3)	8,572(0.4)
	분류 불가	90,111(1.0)	17,221(0.8)	24,737(1.0)	17,885(0.7)	30,268(1.4)
학력	초졸 이하	1,501,981(16.3)	443,424(20.3)	430,290(18.2)	382,266(15.7)	246,001(11.0)
	중졸	411,546(4.5)	108,007(4.9)	115,652(4.9)	105,036(4.3)	82,851(3.7)
	고졸	786,255(8.5)	177,242(8.1)	175,535(7.4)	215,948(8.9)	217,530(9.7)
	전문대졸	484,766(5.3)	106,859(4.9)	114,773(4.9)	136,002(5.6)	127,132(5.7)
	대졸 이상	835,562(9.1)	198,359(9.1)	211,216(9.0)	217,579(8.9)	208,408(9.3)
	분류 불가	5,199,361(56.4)	1,153,863(52.7)	1,311,911(55.6)	1,374,439(56.5)	1,359,148(60.6)
외국인		17,789(0.2)	2,608(0.1)	3,770(0.2)	5,183(0.2)	6,228(0.3)

출처 : 이동임 외(2013). 2013 공인민간자격 통계연보

2013년 12월 기준으로 공인된 민간자격 가운데 소양자격은 38종목이며, 직업자격은 47종목으로 직업 자격종목 수가 많다. 하지만 응시자 수는 소양자격이 월등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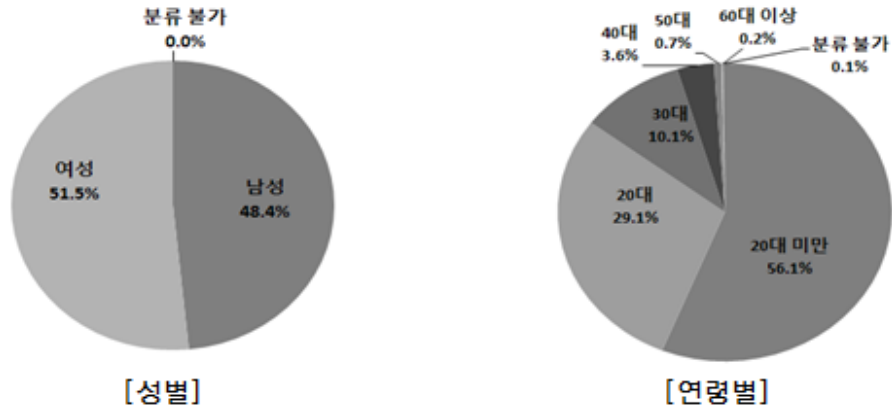
소관 부처	종목 수	자격종목
금융위원회	7	신용관리사, CRA(신용위험분석사),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자산관리사, 재경관리사, 회계 관리
기획재정부	5	국제금융역, 외환전문역,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경제경영이해력인증 시험 매경TEST, 세무회계
미래창조과학부	18	e-Test Professionals,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인터넷정보관리사, 리눅스 마스터,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네트워크관리사, PC정비사, 정보기술자격(ITQ)시험, PC Master(정비사),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SQL자격, 정보보호전문가(SIS), ERP물류정보관리사, ERP생산정보관리사, ERP인사정보관리사, ERP회계정보관리사,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전문가(IT-PMP), RFID기술자격검정
교육부	28	한자능력급수, 실용영어, TEPS(영어능력검정), 한자실력급수, 한자·한문지도사,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한자한문전문지도사, 한자급수인증,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 한국영어검정, 한국한자검정, 한자능력자격, Mate Speaking, Mate Writing, FLEX 중국어, FLEX 일본어, FLEX 독일어, FLEX 스페인어, FLEX 프랑스어, FLEX영어, FLEX러시아어(듣기/읽기), 상공회의소 한자, YBM상무한검, 한자어능력, 브레인트레이너,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 실용수학
법무부	1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안전행정부	3	옥외광고사, 행정관리사, 정보시스템감리사
문화체육관광부	5	실천예절지도사, 종이접기마스터, 한국실용글쓰기검정, 국어능력인증시험, KBS한국어능력검정
산업통상자원부	8	무역영어, 샵마스터, 패션스타일리스트, 지역난방설비관리사, CS Leaders(관리사), GTQ, 빌딩경영관리사,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보건복지부	3	점역 교정사, 병원행정사, 수화통역사
고용노동부	5	기계설계제도사, 컴퓨터 운용사, 가구설계제도사, 문서실무사, 전산세무회계
국토교통부	1	자동차진단평가사
관세청	1	원산지관리사
경찰청	3	열쇠관리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신변보호사
산림청	3	수목보호기술자격, 분재관리사, 조경수조성관리사
합계 (14개 부처청)	91개	91개 종목 56개 기관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운영센터 내부자료.

전체 공인민간자격 응시자 가운데 대략 78.6%가 소양자력에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양자력의 경우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 취득이 어렵지 않아 청소년의 응시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양자력은 청소년의 진학을 위한 스펙관리용으로 활용되거나 대학진학 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과 연동되어 대학 학업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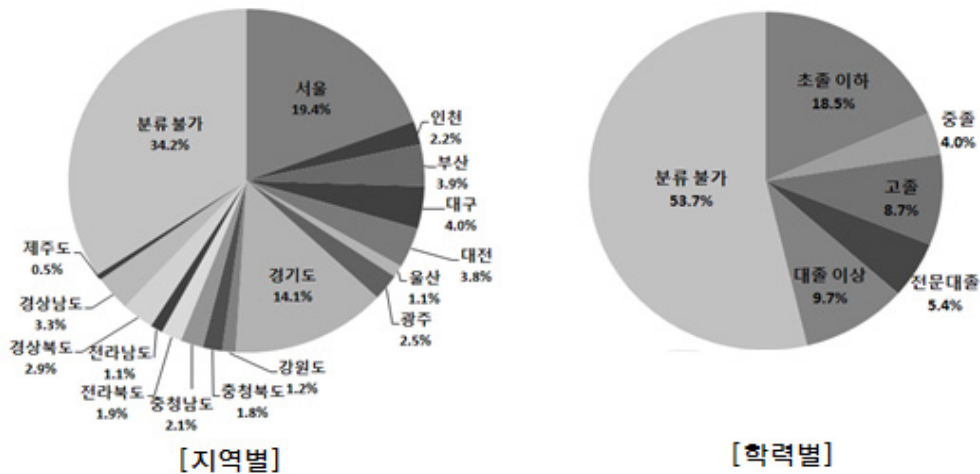
소양자력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각종 소양자력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학업부담을 늘인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소양자력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격기본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평생직업 능력 개발의 촉진을 통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한다는 법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동 법의 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양자격보다 직업자격에 대한 공인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직업자격의 경우 특정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검정이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응시자수가 적으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검정기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소양자력의 경우 상당수가 합격과 불합격이 아닌 점수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인원이 많아 자격취득자의 수험부담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으며, 공인된 민간자격중에 있어서도 등급과 실제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검정수준이 높은 분야보다 검정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한 응시자 선호가 높다. 이는 검정기관들이 출제를 통한 능력의 변별성을 강화하기보단 쉽게 출제하려는 경향을 부추긴다. 시험검정 수준이 낮을 경우, 자격검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격이 가지는 고유한 신호기능 및 선별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

공인제도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양자력에 대한 공인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한자의 경우 낮은 등급의 경우 소양자력으로 보고 높은 등급에 한정하여 공인신청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한자능력시험의 경우 1-10등급이 있다고 가정하면, 가장 어려운 1-3등급정도만 공인신청등급이며, 4-10등급은 공인신청등급에서 제외한다. 그 결과 상당수 청소년들이 공인등급을 기대하고 시험에 응시하나 비공인등급을 얻는 경우가 많다.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점수제 공인민간자격 가운데 소양자력의 성별 및 연령별 신청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높고 20대미만의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 학력별로는 초등학생이 18.5%이며, 중학생이 4%, 고등학생이 8.7%로 나타난다. 이는 소양자력이 직업자격과 관련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출처 : 이동임 외(2013). 2013 공인민간자격 통계연보

【그림 III -4】 점수제 공인민간자격의 지역별·학력별 신청자 비율(2009~2012년)



출처 : 이동임 외(2013). 2013 공인민간자격 통계연보

【그림 III -5】 점수제 공인민간자격의 성별·연령별 신청자 비율(2009~2012년)

앞서 제시된 공인민간자격의 상당수가 한자, 어학, 컴퓨터 활용, 예절 등 소양과 관련한 자격증이며, 이들 자격증 취득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이다. 특히 낮은 등급의 경우 청소년이 많으나, 상위등급(예 : 한자1급, 한자지도자, 실천예절지도자 등)은 성인이 많으며, 해당 소양직무를 청소년에게 가르치는 일과 관련한 자격종목이다. 문제는 이들 자격종목이 해당 직무(예: 한자, 어학, 예절 등)에 한정된 시험과목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한자지도자와 한자1급의 경우 한자

교육자로서 특히 청소년대상의 교육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험과목에 교수학습방법론이나 청소년과 관련한 심리, 지도 등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정의 수월성과 편의성이 강조된 나머지, 해당 직무(예: 한자)에 대한 검정에 충실할 뿐, 교육대상과 지도 등과 관련한 능력을 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 및 교육에 있어서 질적 능력을 알 수 없게 되어있다.

4) 등록민간자격제도 및 종목현황 및 문제점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도입 목적은 첫째, 금지분야 민간자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예방, 둘째, 민간자격 현황 파악 및 민간자격 정보의 수집·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은 금지분야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격을 자율 신설 및 관리·운영할 수 있으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13.10.6.부터). 등록 민간자격은 개정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있으며, 신설 및 등록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글상자 III-2]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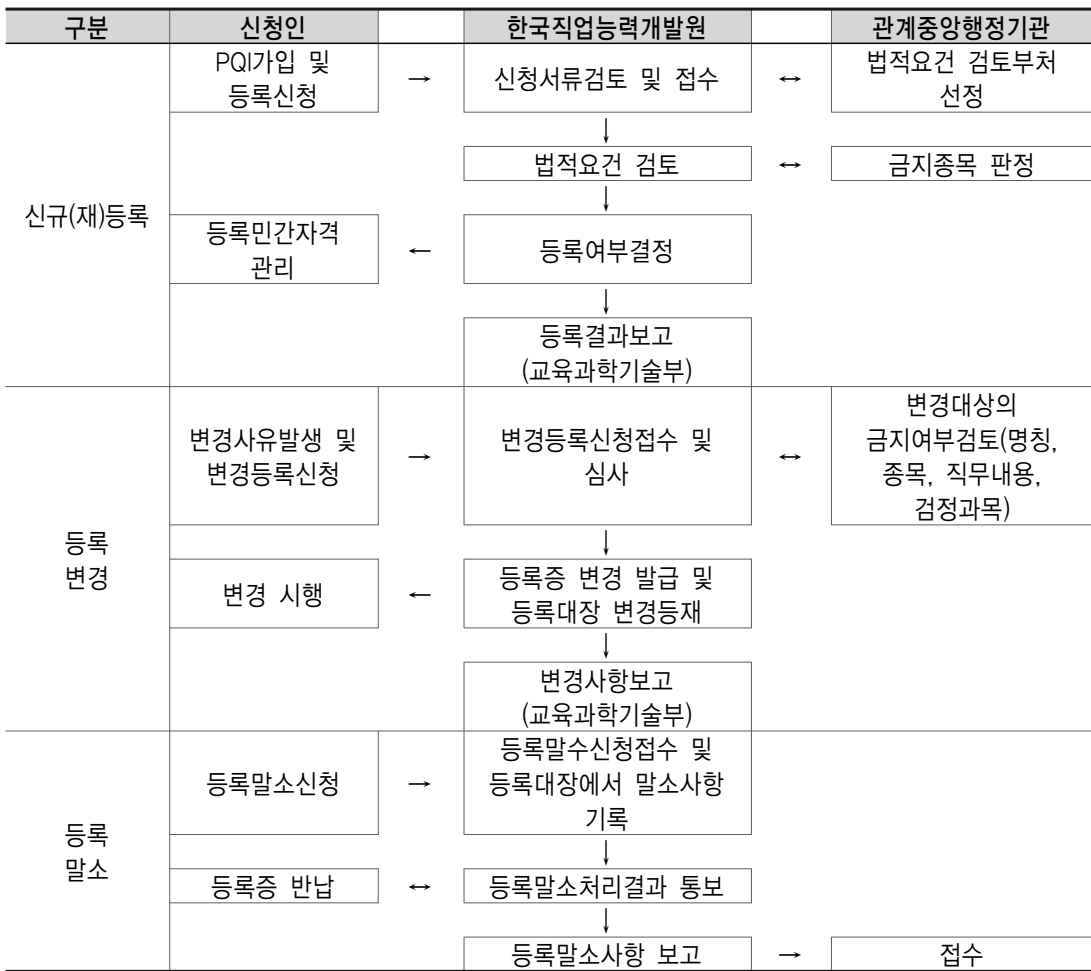
[글상자 III-2] 자격기본법상의 공인관련 근거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민간자격 등록제도 관리·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08년~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신청은 인터넷홈페이지(www.pqi.or.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접수 내용은 구비서류 확인과 법적 요건 검토(금지분야, 금지명칭 및 결격사유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 등)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등록증 발급이 이뤄진다. '14년 7월 현재 등록민간자격은 4,662개(1,332개 기관)의 자격종목이 있으며, 그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출처: 이동임(2012). 2012년 자격제도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 민간자격운영 실태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그림 III -6】 민간자격 등록제도 운영절차(교육부의 예)

민간자격의 수는 사전등록제가 시행 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간자격 등록 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 처벌 및 관리규정이 미흡하였으므로, 정부에 등록 없이 위법적으로 운영하는 자격종목들이 제도 시행과 함께 등록을 신청하였기에 등록민간자격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표 III-11>참조).

표 III -11 연도별 등록 민간자격 현황

구분	접수	등록	등록폐지
2008	304개 기관 829개 종목	265개 기관 655개 종목	17개 종목
2009	189개 기관 561개 종목	142개 기관 380개 종목	2개 종목
2010	249개 기관 736개 종목	227개 기관 539개 종목	14개 종목
2011	484개 기관 1,141개 종목	398개 기관 1,053개 종목	15개 종목
2012	680개 기관 1,909개 종목	497개 기관 1,453개 종목	2개 종목
2013	1,015개 기관 3,590개 종목	757개 기관 2,748개 종목	5개 종목
2014	1,369개 기관 5,756개 종목	523개 기관 1,415개 종목	
계	14,522개 종목	2,106개 기관* 8,188개 종목**	55개 종목

출처 : 민간자격정보서비스(민간자격관리>통계조회), 2014.05.07.15:00자료수집.

등록된 민간자격 종목 수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의 종목 신설·폐지가 빈번이 발생되므로 그 수를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당수 민간자격증은 지속적 검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어렵다. 등록민간자격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형식적 검정이 이루어지므로,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민간자격은 합격률이 매우 높다.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교육훈련과정과 연계되어 교육내용에 대한 형식적인 시험을 보기 때문에 특정 수강생의 상당수가 응시자가 되고, 또한 합격자가 된다. 교육생의 경우 손쉽게 자격증을 얻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경우 검정수수료와 교육훈련생 모집에 도움이 때문에 응시자, 교육훈련생, 검정기관, 교육훈련기관이 모두 쉬운 검정시험을 선호한다. 이처럼 질 낮은 검정은 자격이 가지는 신호기능 및 선별기능을 무력화하므로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를 구분할 수 없게 하여,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장롱자격증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상당수 검정 및 교육훈련기관은 100%합격보장이나 취업보장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으며, 실제 등록민간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다음의 <표 III-12>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모니터링 조사 결과, 민간자격의 허위 및 과장 광고의 유형별 자격검정기관 및 종목 수이다. 미등록 및 금지분야에 관해 조사한 결과 미등록 민간자격이라고 거짓·과장한 기관수는 276개 기관, 900개 종목이며 금지의심 분야 자격(치료, 치유 등의 표기 제한 등)으로는 108개 기관 240개 종목으로 조사되었다. 거짓·과장 광고 현황에 관해서는 등록 민간자격(비공인)을 공인자격과 혼돈케 할 수 있는 광고 사례가 69개 기관 166개 종목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등록을 등록한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취업, 소득보장 광고, 실증할 수 없는 내용 및 부당한 비교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2년간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상담건수 '12년 1,162건, '13년 1,557건이며, 특히 일부 민간자격업체들이 미등록 및 금지의심 분야를 광고하거나 '고소득보장'이나 '취업해결'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을 남용하고 있다. 민간자격의 양적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민간자격의 허위 및 과장 광고는 비교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저학력 계층이나 젊은 계층이 사회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민간자격 취득에 있어서 신중한 필요가 있다. 막연히 따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에게 필요한, 실용성 높은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등록 민간자격의 상당수가 독서, 한자, 어학, 컴퓨터 활용, 기능지도, 예절 등 소양과 관련한 자격증이 일부 있다. 이들 자격의 상위등급도 청소년 대상의 소양이나 기술, 기능을 전달하는 일과 관련한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이나 상담, 지도방법론, 청소년 이해 등과 관련한 내용을 검정과목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인민간자격과 마찬가지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능력에 대한 질적 담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표 Ⅲ-12 '13년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모니터링 조사 결과

구 분	인터넷 홈페이지 모니터링 조사결과	
	거짓·과장 (기관수)	자격 종목 수
미등록 및 금지분야		
미등록 민간자격	276개 기관	900개 종목
금지분야 자격	108개 기관	240개 종목
거짓·과장 광고 현황		
미등록을 등록한 것처럼 오인케 할 수 있는 사례	22개 기관	38개 종목
등록 민간자격(비공인)을 공인자격과 혼돈케 할 수 있는 광고 사례	69개 기관	166개 종목
취업, 소득보장 광고 사례	19개 기관	39개 종목
실증할 수 없는 내용 및 부당한 비교 광고 사례	54개 기관	118개 종목

3. 소결 및 시사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숙련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노동력의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은 커지고 있다. 숙련의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이며, 노동의 유동성 증대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신호기제의 필요성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신호기제는 학력, 경력, 자격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성인의 경우 취업이나 노동 이동에 있어서 경력이 가장 중요한 신호기제가 되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직장 경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첫 직장의 입사에 중요한 신호기제는 학력과 자격이 될 것이다.

자격은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격은 배운 학습에 대한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과 자신의 능력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신호기능을 가진다. 기업입장에서 자격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별하는 기능을 가진다. 자격의 이런 기능 때문에 흔히 자격을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수단으로 본다. 특히 청소년과 같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에 자격은 교육부분에서 노동부분으로 원활한 이동을 돕는다. 문제는 자격시장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레이섬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명목가치를 지닌 것이 유통될 때, 실질가치가 큰 것은 사라지고 오히려 실질가치가 낮은 것이 유통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설자격의 경우 그 자격취득에 대한 비용과 취득자의 능력에 자격취득자에 대한 평판 등의 정보가 부족하므로 어떤 자격이 좋은 자격인지 또는 나쁜 자격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응시자의 경우 취득이 어려운 자격증보다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자격증을 취득하여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신호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합격이 용이한 자격증을 선호하는 것이다.

검정기관에 있어서도 모집이 원활하고 쉬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비용(출제비용, 기타)이 적게 들어가므로 합격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문제는 합격률이 높을 경우 자격의 고유기능인 신호기능과 선별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기업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정보가 없을 경우 자격취득자를 선호하지만, 장기적으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며, 자격에 대한 평판이 형성된다. 당연히 합격률이 매우 높아 질 낮은 인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될 경우 기업입장에서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어 자격증 취득이 노동시장 진입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고, 자격취득자에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은 합격률은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간자격의 경우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당수 민간자격은 질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며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장롱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수많은 민간자격이 신설되고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국가자격이 신설되지 못한 수많은 영역에 민간자격이 난립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자격신설 및 검정을 운영하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스펙 쌓기의 수단으로 자격이 활용되기도 한다.

반면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 종목만으로도 수천 개 이상이 되어 정확한 질 관리가 어렵고, 활용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등록자격 가운데 소양자격 외에 우수한 직업자격을 발굴하여, 공인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시장에 난립된 민간자격의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자격(등록 및 공인 포함)의 상당수가 청소년에게 소양이나 기술 및 기능을 교육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해, 교육방법론 등이 시험과목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효적인 교육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대상의 지도 및 교육과 관련한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의 지도점검, 모니터링, 공인심사 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자격검정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자율적 개선을 지도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역시 청소년 지도와 관련한 직무가 있을 경우, 검정과목, 출제기준, 출제 등에 반영되어, 청소년교육과 지도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 IV 장

청소년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쟁점과 발전과제

1. 청소년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의
쟁점과 발전과제
2. 청소년 민간자격 제도의 쟁점과
발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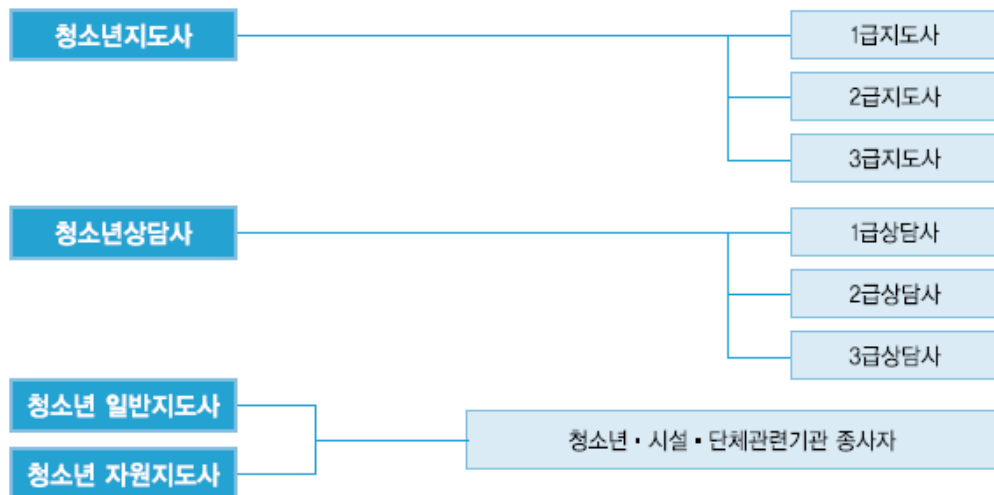
제 IV 장

청소년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쟁점과 발전과제

1. 청소년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의 쟁점과 발전과제

1) 청소년지도사의 개념 및 현황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2년까지 총 30,092명이 배출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6,097명을 넘어서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자료 : 여성가족부(2013).

【그림 IV-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제21조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http://www.law.go.kr>).

표 IV-1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연수를 실시한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취득 과정은 다음과 같다(청소년지도자 종합정보시스템 <http://yworker.youth.go.kr/>).

시험공고	시험일시 90일전에 공고 (일간신문, 홈페이지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 원서접수	모든 응시자 인터넷 접수 실시/ 검정 수수료 42,000원 (인터넷 접수시 결제) ※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	1급: 5과목 (각 20문항 - 객관식 14, 주관식 6) 2급: 8과목 (각 20문항 - 객관식 20) 3급: 7과목 (각 20문항 - 객관식 20)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필기시험에서 모든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인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경력응시자(필기시험 합격자)와 검정과목 전공이수자 대상 응시서류 접수 ※ 제출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이의신청 및 보완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자 대상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보완서류 접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서류전형결과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결격사유조회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결격사유 신원조회 실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면접시험	개별 면접 또는 집단 면접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림 IV-2】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과정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지도자 종합정보시스템 <http://yworker.youth.go.kr/>).

표 IV-2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급	응 시 자 격 기 준
2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주 1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주 2 :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주 3 :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주 4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주 5 : 2급 1,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에 한하여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2급 2호, 4호 및 3급 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면접시험 응시
- ※ 경력인정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함
- ※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 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 ※ 검정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이수한 과목으로 인정함.

표 IV-3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구제도 과목)

등급	영역	이 수 과 목
2급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급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주 1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가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함

주 2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는 것이 아니며,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라 하더라도 현(現) 검정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면 필기시험 면제대상자가 됨

표 IV-4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 (5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면접없음)
2급 (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 (3급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7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 접

주 1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검정과목 전공이수[졸업(예정)자 대상]관련으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표 IV-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구분	영역	이 수 과 목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인권과 복지」 과목 이수자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2급 자격기준 중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와, 3급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종사분야별 경력인정 비율은 <표 IV-6>과 같다.

표 IV-6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별 경력인정 비율

구분	종사분야	경력환산 점수 (1월당)	비고
1급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1점	1점은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1

구분	종사분야	경력환산 점수 (1월당)	비고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제1호~제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 받은 경력		
2군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 「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2.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 「경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5. 제10호~제14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0.5점	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함

표 IV-7 “청소년이용권장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구분	내용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경력 100% 인정)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경력 50% 인정)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6.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高水敷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표 IV-8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

구분	내용
종사경력 환산절차	자신의 업무가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에 해당되는지 확인 종사분야에 해당될 경우 : 해당되는 종사분야의 경력인정비율 확인 다음의 도식에 의거하여 자신의 인정 경력을 산출 : 종사경력(최종 인정경력) = 근무기간(개월) × 경력인정비율(1.0/0.5/0.3)
종사경력 환산사례	청소년수련시설(종사분야 제1항)에서 36개월 근무 : 36개월 × 1.0 = 36개월 청소년이용시설(종사분야 제10항)에서 36개월 근무 : 36개월 × 0.5 = 18개월 청소년지도위원(종사분야 제16항)으로 36개월 활동 : 36개월 × 0.3 = 10.8개월
중복경력 처리문제	동일기간 내의 중복경력(학력포함)이 있을 경우 하나의 경력(학력)만을 선택해야 함 예시 1) 청소년단체에 근무하면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 → 청소년단체 근무경력 또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경력 중 하나를 선택
지도자 전문연수 경력 산정	연수시간 20시간당 경력 1개월 산정 (총 12개월까지 경력 인정) ※ 2003년7월 이후 청소년 담당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에 한하여 인정(40시간 이상 전문연수만 경력 인정)
지도사 보수교육 경력 산정	교육시간 20시간당 경력 1개월 산정 (총 1개월만 경력 인정) ※ 2006년부터 청소년담당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12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470명, 2급 청소년지도사 19,645명, 3급 청소년지도사 8,977명 등 총 30,092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2012년도에는 총 3,262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는데 이 중 여성이 2,642명으로 81.0%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급은 8명, 2급은 2,502명, 3급은 752명 등이었다.

표 IV-9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별	1급		2급		3급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3	-	-	311	174	156	72	467	246	713
1994	78	18	229	146	137	100	444	264	708
1995	81	20	193	168	137	116	411	304	715
1996	36	11	105	88	54	47	195	146	341
1997	98	33	167	147	110	80	375	260	635
1998	87	33	122	158	93	100	302	291	593
1999	77	51	266	264	96	114	439	429	868
2000	70	43	255	330	139	151	464	524	988
2001	58	39	421	569	221	275	700	883	1,583
2002	78	39	310	527	189	286	577	852	1,429
2003	47	43	269	431	194	386	510	860	1,370
2004	28	46	232	431	180	400	440	877	1,317
2005	14	17	160	296	217	688	391	1,001	1,392
2006	43	47	314	478	148	218	505	743	1,248
2007	11	20	247	448	37	146	295	614	909
2008	7	20	342	1,744	114	517	463	2,281	2,744
2009	11	23	359	1,806	186	546	556	2,375	2,931
2010	20	33	437	1,937	177	691	634	2,661	3,295
2011	30	52	436	1,826	140	567	606	2,445	3,051
2012	3	5	454	2,048	163	589	62	2,642	3,262
누 계	877	593	5,629	14,016	2,888	6,089	9,394	20,698	30,092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13).

표 IV-10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구분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24조2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보수교육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역량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1회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의 목표는 첫째, 청소년지도사로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기능, 정보제공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 둘째,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환경 변화와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증진 셋째,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청소년분야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교육대상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단체,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이다. 사업지원부서인 인사, 회계, 홍보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과 연계된 업무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이다.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해당 기관의 통상근무시간 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보수교육 대상이다. 청소년지도사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채용한 해에 보수교육을 받거나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입사하여 2015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2017년, 2019년 등등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사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즉 간호사, 시설관리(전기, 기계, 건축, 소방, 조경 등), 영양사, 조리사(원), 운전원, 경비, 청소 등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단체를 위탁한 기관·법인·단체(보수교육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교육대상자가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보수교육 신청일 기준 재직상태가 아닌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단, 퇴사 후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입사하여 전·현직 기관의 총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2014년 11월에 보수교육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 10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과 동시에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수료는 총 보수교육 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생활평가에 의해 퇴사사유가 발생한 교육생은 90% 이상 수료하여도 교육이수가 불가하며,

세부사항은 교육운영세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재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록인원이 3,224명으로, 2013년 10월말 기준 1,45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보수교육 대상기관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 혹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해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하여 보수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년이 보수교육 대상연도인 경우 2014년 7월에 병역 휴직이 예정된 경우에는 병역 휴직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곳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시 목천읍 소재)이며 교육비용은 1인당 74,900원으로 전체 비용(149,800원)의 50% 수준은 자부담이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50만원을 부담하나,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으로 교육 대상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 연기 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보수교육 참여로 근무성적 평가 감점, 인사조치 등을 한 경우) 기관 운영자 역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2014).

표 IV-11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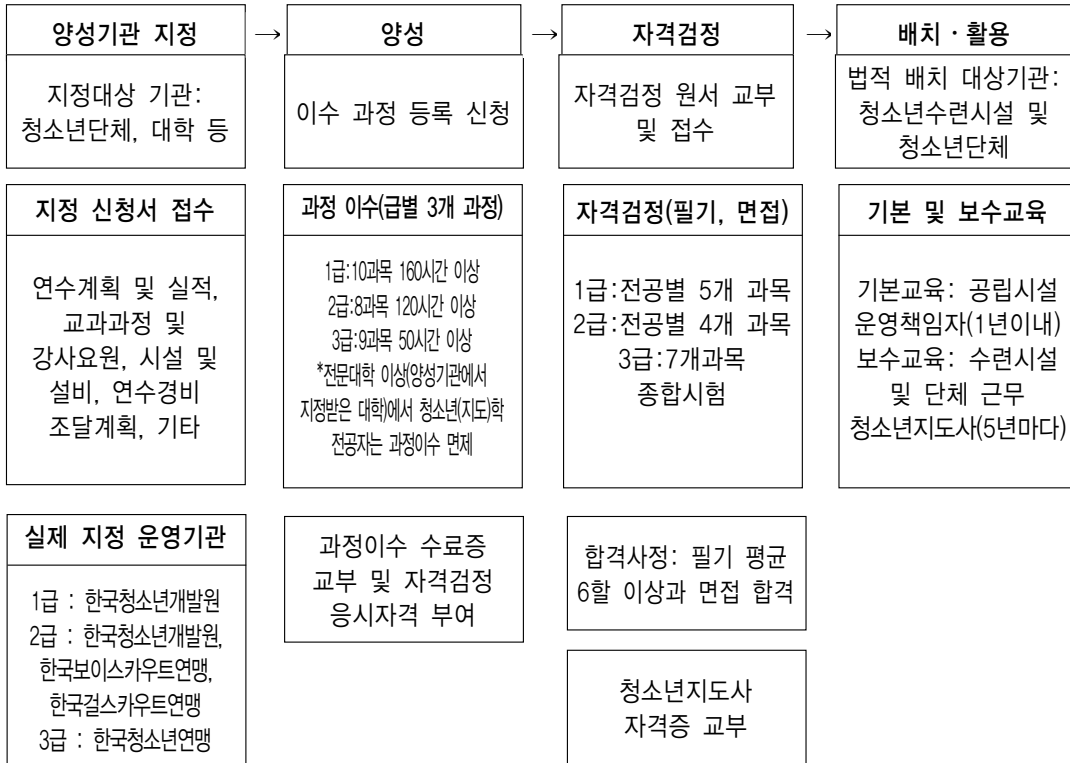
구분		교육기간	과 정 명(인원)	인원
3월	1차	3.24(월)~26(수) 「2박3일/20H」	기관운영자과정(30) / 중간관리자과정(30) 실무자A과정(30) / 실무자B과정(30)	120
	2차	3.27(목)~29(토) 「2박3일/20H」	기관운영자과정(30) / 중간관리자과정(30) 실무자A과정(30) / 실무자C과정(30)	120
4월	3차	4.8(화)~10(목) 「2박3일/20H」	중간관리자과정(30) / 실무자A과정(30) 실무자B과정(30) / 실무자C과정(30)	120
	4차	4.14(월)~16(수) 「2박3일/20H」	기관운영자과정(30) / 중간관리자과정(30) 실무자A과정(30) / 실무자B과정(30) / 실무자C과정(30)	150
7월	5차	7. 7(월)~9(수) 「2박3일/20H」	중간관리자과정(30) / 실무자A과정(30) 실무자B과정(30) / 실무자C과정(30)	120
	6차	7.10(목)~12(토) 「2박3일/20H」	중간관리자과정(30) / 실무자B과정(30) 실무자C과정(30) / 실무자D과정(30)	120
8월	7차	8.25(월)~27(수) 「2박3일/20H」	중간관리자과정(30) / 실무자A과정(30) 실무자B과정(30) / 실무자C과정(30)	120
	8차	8.28(목)~30(토) 「2박3일/20H」	기관운영자과정(30) / 실무자A과정(30) 실무자B과정(30) / 실무자C과정(30)	120
10월	9차	10.14(화)~16(목) 「2박3일/20H」	중간관리자과정(30) / 실무자A과정(30) 실무자B과정(30) / 실무자C과정(30)	120
	10차	10.20(월)~22(수) 「2박3일/20H」	중간관리자과정(30) / 실무자A과정(30) 실무자B과정(30) / 실무자D과정(30)	120
11월	11차	11.24(월)~26(수) 「2박3일/20H」	기관운영자과정(30명) / 중간관리자과정(30) 실무자A과정(30) / 실무자B과정(30) / 실무자C과정(30)	150
	12차	11.27(목)~29(토) 「2박3일/20H」	중간관리자과정(30) / 실무자A과정(30) 실무자B과정(30) / 실무자C과정(30)	120
합 계			12차수 6과정(50회)	1,500명

※ 실무자A : 기획역량향상 / 실무자B : 소통역량향상 / 실무자C : 사업지원역량강화
실무자D : 진로활동운영역량향상

2)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한계점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지도사 양성체제도 확립되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변화과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양성체제의 도입단계(1993년 시행), 청소년지도사 양성체제의 개방화와 전문화단계(1999년 개정), 전문선택 영역의 폐지 및 필기시험 면제단계(2005년 개정)의 3단계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2012).

최초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는 '사전 연수, 후 자격검정'을 특징으로, 기존의 청소년수련 시설과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유자격화와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수료)한 후 자격검정시험을 합격할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양성체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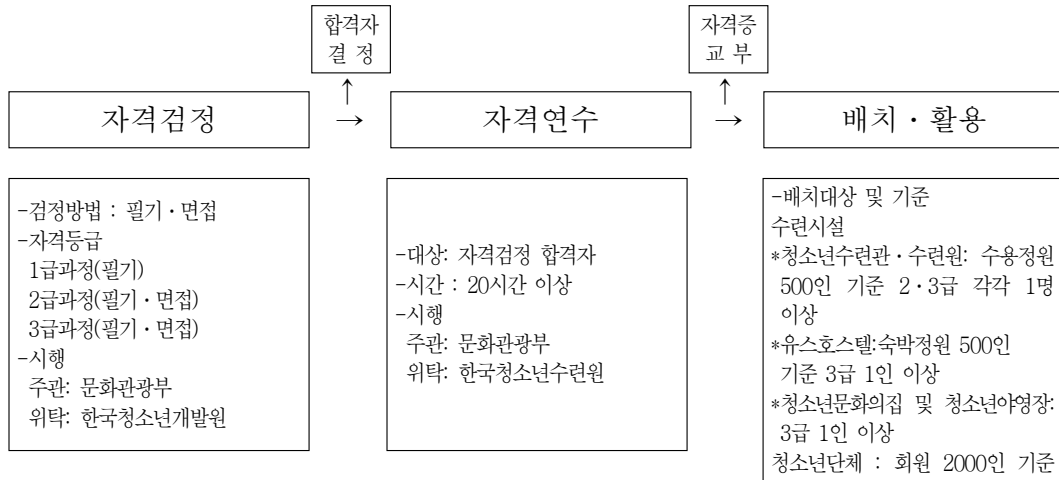
이광호(2000). p. 12

【그림 IV-3】 도입단계에서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단체·대학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양성기관 지정 절차와 심사를 거쳐 사전에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을 지정하였다. 이후 청소년지도사 양성 수급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등록인원을 사전에 계획하여 이수과정(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접수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기관에 할당된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정해진 시간의 이수과정을 운영하였다. 연수대상자가 이수과정 상에 정해진 시간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수료증을 발급받고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이 후 최종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이광호, 2000;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2012). 그러나 이 양성체계에서 사전 이수과정 운영으로 인한 자격검정 응시기회의 제한, 이론중심의 교과 운영으로 인한 현장 기능습득의 한계,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이 교양, 전공, 실습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필수와 선택과목의 구분이 미흡하여 실제 연수과정에서 자격검정 과목 위주의 운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이광호, 2000).

다음으로 청소년지도사 양성체제의 개방화와 전문화단계(1999년 개정)에서는 1999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더불어 사전연수제도를 폐지한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는 ‘선 시험, 후 연수’를 특징으로, 국가 차원의 규제완화를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개방화와 자격검정 과목에 전문선택 영역 검정과목을 두어 전문화를 추구하였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자격검정은 한국청소년개발원, 자격연수는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1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정하였으며, 자격검정 과목을 공통영역(필수와 선택으로 구분)과 전문선택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문선택 영역을 보완하였다. 또한 사전이수과정 운영 폐지를 보완하고 전문선택 영역과 관련된 전문연수과정으로 최소한 40시간 이상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신규 청소년지도사는 20시간 이상의 사후 연수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든 자격제도의 정기적 보수교육 제도를 철폐하는 방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2012).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론중심의 자격검정 시험과목 운영으로 인한 현장 지도업무 수행의 곤란과 비전문성, 검정과목의 적합성 문제,

검정과목수의 과다, 전문선택 영역 과목의 검정방법 부적절성 등이 제기되어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과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함병수 외, 2004).



함병수 외(2004). p. 19

【그림 IV-4】 1999년 개정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체계

이에 2005년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선택 영역의 폐지 및 필기시험 면제단계(2005년 개정)에서는 당시 현장전문가 및 연구기관 종사자(무시험전형 반대)와 학생·교수집단(무시험전형 선호) 사이에 무시험전형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를 무시험전형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적 입장에서는 적격자에 대한 변별력 상실, 이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비전문성이 제기되었고, 무시험전형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무시험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의 타 자격제도와 의 형평성 유지, 현장실습 및 연수 등의 조건부를 통한 전문성 확보 등이 주장되었다(김경준, 2008). 법안 조정과정에서 청소년관련학과에서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등의 합리적 제도 마련과 실행을 전제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3년 간의 경과 규정을 두어 2008년도부터 자격검정 교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시험과 자격연수 만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이춘화 외, 2008).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했던 13개 전문 선택영역 이론 시험의 경우, 특기능력에 대한 이론시험 형태 검정 방법의

부적절성, 시험문제의 변별력 및 과목 간 난이도 조절 등의 이유로 전면 폐지되었다. 이에 2급 10과목(공통필수 6과목, 공통선택 6과목 중 택3, 전문선택 13과목 중 택1)과 3급 7과목(공통필수 6과목, 전문선택 13과목 중 택1)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대학에서 자격검정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대신 자격연수 시간이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2012). 그러나 전문선택 영역 폐지에 따른 대안책 실행의 미비, 자격검정과목의 축소와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대책 미흡, 예비지도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 자격연수 운영의 전략과 조직 정비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춘화 외, 2008).

표 IV-12 2005년 이후 시행된 자격검정의 변경 내용

구분	2005년 ~ 2007. 12. 31일까지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	
1급	① 주·객관식 필기시험 → ② 자격연수 → ③ 자격증 취득 ※ 검정과목 : 5과목	-좌 등-	
2급	① 객관식 필기시험/면접 → ② 자격연수 → ③ 자격증 취득 ※ 검정과목 : 2급 8과목 / 3급 7과목	전공과목 이수자	① 면접 → ② 자격연수 → ③ 자격증 취득
		육성업무 종사경력자	-좌 등-

이춘화 외(2008). p. 12

표 IV-13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주요 변화

구분	1993년 시행	1999년 개정	2005년 개정
등급	1·2·3급	1·2·3급	1·2·3급
주요 특성	사전연수 후 자격검정 - 사전 연수제도 - 양성기관 지정 (대학 및 청소년단체)	자격검정 후 합격자 연수 - 사전 연수제도 폐지 - 2,3급 13개 전문선택 영역 추가 - 응시자격 개방체제	자격검정 후 합격자 연수 - 2,3급 13개 전문선택 영역 추가 - 전공과목 이수자 필기시험 면제 (2008년부터 시행) - 검정과목 축소·조정

구분	1993년 시행	1999년 개정	2005년 개정
응시 자격	사전연수 이수 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연수	사전연수	- 자격연수 선택('99-'01) - 자격연수 의무('02-'05)	연수시간 상향 조정 (20시간 이상→30시간 이상)
한계점	- 자격검정 응시기회의 제한 - 이론중심의 교과 운영으로 인한 현장 기능습득의 한계 - 필수와 선택과목의 구분 미흡으로 인한 실제 연수 과정에서 자격검정 과목 위주의 운영	- 이론중심의 자격검정 시험과목 운영으로 인한 현장 지도업무 수행의 곤란과 비전문성 - 검정과목의 적합성 문제 - 검정과목수의 과다 - 전문선택 영역 과목의 검정방법 부적절성	- 전문선택 영역 폐지에 따른 대안책 실행의 미비 - 자격검정과목의 축소와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대책 미흡 - 예비지도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 - 자격연수 운영의 전략과 조직 정비 미흡

3)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발전 과제

이상의 연구내용을 분석해볼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발전 과제는 청소년지도사 수급·배치·활용의 극대화 문제, 국가직무능력표준화 사업에 따른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문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교육과정상의 체계화 문제, 현장실습의 의무화 문제, 필기시험의 부활 문제, 면접시험제 문제, 보수교육의 문제 등 7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수급·배치·활용의 극대화 문제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청소년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인성·배려·나눔 함양을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및 인성,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원의 4가지를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역사회 청소년센터(가칭)」로 개편하고 종합지원 기능 강화 및 설치확대 추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권역(지역)별 특성화(전문화)된 국립청소년시설 확충 뿐 아니라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청소년문화예술활동 활성화(청소년문화존 지원 확대),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또래상담 활성화 등의 청소년활동 영역 및 서비스를 확대하다 보면 자연스레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을 살펴보면,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인력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만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게 매우 낮고(2011년 12월 기준 82.1%, 야영장 61.1%, 수련관 67.4%, 수련원 77.2%), 정해진 배치기준 또한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으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가 상당한 실정이다(박정식, 2012, p. 78; 김지연, 2012, p.85). 비록 2014년 3월 24일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지도 영역을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였으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검토하였을 때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에 의해 청소년지도사의 수급·배치·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게 정해진 배치기준을 따르도록 시설평가 기준 배점을 확대하거나 의무채용 하도록 강제하며 배치율이 높은 기관은 포상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시설과 경찰 등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청소년지도사를 소년원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하며,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군부대 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군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에 있어 청소년지도사를 선발 시 우대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화 사업에 따른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문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국정과제의 하나인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화)사업 대상으로 사회복지-청소년지도-청소년활동의 직무능력표준화를 완료하였다(소관부처 여성가족부). 2014년 2월 청소년지도 분야는 소분류-청소년지도, 세분류-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복지로 확정되어 공시되었다(송민정, 201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HRM협회(2013)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의 직무는 “청소년사업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자원관리, 인증관리, 행정관리, 네트워크관리, 정보관리 등을 통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능력단위는 총 16개로 각 능력단위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역량이 작성되었으며, 능력단위요소는 직능수준에 따라 4수준~8수준까지 구분되어 있다(최소한의 자격점정 내지 학력 수준).

표 IV-14 2013년 NCS 청소년지도-청소년활동 능력단위 내용

1. 사업 기획	2.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3. 청소년프로그램 실행	4. 청소년프로그램 평가
5. 자원봉사활동 운영	6. 청소년활동 인증관리	7. 청소년자치활동 운영	8. 청소년 생활지도
9. 청소년기관 행정지원	10. 네트워크 구축·운영	11. 청소년활동 정보관리	12. 청소년활동 안전·위생관리
13. 교육훈련	14. 청소년 권익증진활동 지원	15. 청소년현장실습 지도	16. 청소년조사연구

2013년 NCS 청소년활동 능력단위를 살펴보면, 산업현장 경험을 기준으로 4수준은 청소년지도사 3급,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요구하며 사업운영실무자/사원, 대리, 주임, 간사 등의 직책으로 청소년생활지도, 청소년활동정보관리 등이 해당된다. 5수준은 청소년지도사 2급,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중간관리자급의 직책으로 청소년프로그램 관련 업무, 자원봉사, 활동안전·위생, 권익증진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6수준은 석사 이상의 학력으로 실무책임자/부장, 차장 등의 직책 수행, 청소년 기관행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7단계 이상은 박사급으로 총괄책임자 및 운영대표자의 직책을 담당하며 사업기획, 청소년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¹⁰⁾. 그러나 이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등의 기본 업무를 중심으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절차 내지 개발 과정에 집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내용별, 영역별 직무내용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활동에 관한 직무분석이 주를

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람.

이루고 있어 청소년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실무현장의 특성 및 직무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송민경, 2014).

표 IV-15 NCS 청소년지도-평생경력개발 경로모형

직능 수준	자격증(청소년지도사)/학력	직책명	능력 단위
7이상 (8까지)	1급/ 박사	총괄책임자/ 본부장, 사무국장, 실장, 연구위원(선임) 등	사업기획, 청소년조사연구
		운영대표자/ 관장, 원장, 센터장, 소장, 교수, 기관장, 이사장 등	
6	1급/ 석사	실무책임자/ 부장, 차장 등	청소년기관행정지원 네트워크구축·운영 교육훈련
5	2급/ 4년제 대학	중간관리자/ 과장, 팀장, 전문연구원 등	청소년프로그램개발 청소년프로그램실행 청소년프로그램평가 자원봉사활동운영 청소년활동인증관리 청소년자치활동운영 청소년활동안전·위생관리 청소년권익증진활동지원 청소년현장실습지도
4	3급/ 전문대학	사업운영실무자/ 사원, 대리, 주임, 간사 등	청소년생활지도 청소년활동정보관리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에서, 2급과 3급의 차이는 “청소년복지론” 한 과목 차이이며, 1급 자격검정 과목 중 “청소년인권과참여”는 실무자의 업무수행에 보다 더 적합한 과목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안전 및 위생, 중간관리급 이상의 수퍼비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목의 변경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급수별 실제 직무 및 역할에 부합되는 자격 검정 과목이 추가 개설되거나 과목 간 변경 조정 혹은 전면적인 과목 재검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보육교사 자격은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학점으로

실습을 포함한 51학점으로 확대되었고 사회복지사 자격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42학점에서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례관리 3과목을 기존의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꿔 51학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및 학회 차원의 노력이 정부부처의 지원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교육과정상의 체계화 문제

현재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교수 요목을 살펴보면(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그 내용에 있어 2,3급이 뚜렷이 구분이 안되며 과목간 내용의 중첩성, 모호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보는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가르치는 교수자 또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표 IV-1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교수요목**

검정 교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2,3급 공통) 유사인정 교과목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과목개요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실천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통해 법과 제도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한다. 청소년정책의 수립, 정책을 위한 행정조직, 기구들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육성 및 보호업무 체계와 청소년기본법과 관계법령 등을 학습하고, 시행되는 정책사업 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육성제도 전반을 이해한다.
교수요목	1주차 청소년육성제도의 개념 소개 2주차 법, 행정, 정책에 대한 기초 이해 3주차 청소년육성 정책의 역사와 영역 4주차 청소년육성 정책 기본계획의 이해 5주차 청소년육성 행정의 이해 6주차 청소년육성 재정의 이해 7주차 청소년기본법 8주차 청소년활동에 관한 법(청소년활동진흥법) 9주차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청소년복지지원법) 10주차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1(청소년보호법) 11주차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2(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주차 청소년관계법 1(아동복지법, 소년법, 근로기준법 등) 13주차 청소년관계법 2(UN아동권리협약, 청소년헌장 등) 14주차 청소년관련법 적용사례와 문제점 15주차 청소년육성 정책의 정리 및 향후과제

예를 들면, 청소년심리 및 상담 과목은 청소년심리 혹은 청소년상담 둘 중에 한 과목만 수강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학교마다 청소년심리 혹은 청소년상담 중 한과목만 개설할 수 있으며, 교수자에 따라 심리를 강조한 교육내용을 중요시 다루거나 상담을 강조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모든 과목에서 청소년의 발달욕구 및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실제적인 내용이 학습되기 때문에 과목간의 차별성, 독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정 교과목	청소년심리 및 상담1(2,3급 공통) '청소년심리 및 상담1'은 유사인정 교과목인 '청소년심리' 중심으로 교수요목이 구성 됨
과목개요	청소년심리학의 학문적 기초와 청소년발달의 이론적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과정을 학습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 등의 다양한 환경을 알아보고,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및 발달장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연구 영역들을 살펴보고 청소년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들의 대해서 학습한 후,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교수요목	1주차 청소년(기) 이해
	2주차 청소년 심리 학문 기초
	3주차 청소년 발달이론
	4주차 청소년기 생물학적 발달
	5주차 청소년기 인지발달
	6주차 청소년기 도덕성 발달
	7주차 청소년기 성격발달
	8주차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9주차 청소년기 정서발달
	10주차 청소년기 성과 성역할
	11주차 청소년기 학업과 진로
	12주차 청소년기 가정
	13주차 청소년기 친구(동년배)관계
	14주차 청소년기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행동
	15주차 청소년기 발달장애와 비행

검정 교과목	청소년심리 및 상담2(2,3급 공통) ‘청소년심리 및 상담2’는 유사인정 교과목인 ‘청소년상담’ 중심으로 교수요목이 구성 됨
과목개요	상담의 기초에 대한 이해를 통한 청소년상담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자질 및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고, 청소년상담의 개념 이해와 다양한 이론적 접근의 원리를 학습한다. 상담의 이론적 모델(정신분석, 인간중심, 형태주의, 행동주의 등)의 주요개념과 실재를 통해 청소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진로, 대인관계, 가족 등의 구체적인 문제로 구분하여 각 요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입전략을 알아보고, 실제적인 실습방법을 적용하여 기초적인 상담 자질을 연습하여 자기인식·수용·이해를 통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다. 상담과정과 기법 및 상담사례의 이해를 통해 실제 청소년 상담진행에 유용한 상담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교수요목	1주차 상담의 일반적 원리 2주차 청소년상담의 원리와 방향 3주차 청소년상담전문가의 윤리 및 자질 4주차 정신분석 상담이론 5주차 인간중심 상담이론 6주차 형태주의 상담이론 7주차 행동주의 상담이론 8주차 인지행동 상담이론 9주차 청소년상담의 과정(초기, 중기, 종결) 10주차 청소년상담의 실제 11주차 청소년 상담연습(주의집중, 경청, 재진술) 12주차 청소년 진로·학업상담 13주차 청소년 대인관계상담 14주차 청소년 가족상담 15주차 청소년상담의 현장과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에서의 과목개요에 나타난 “청소년활동을 위한 실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운영기술, 평가 등 프로그램 전 과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는 과목 개요 내용, 청소년지도방법론에서의 청소년수련활동 지도방법도 중복될 수 있다.

검정 교과목	청소년활동(2,3급 공통) 유사인정 교과목 : 청소년수련활동
과목개요	청소년활동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고 청소년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지식을 익혀 청소년활동이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청소년활동이 가지는 교육과의 관계를 고찰하며 그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시대적 의미와 좌표를 탐색해 보고 다양한 이론과 실재를 병행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방법을 익힌다.
교수요목	1주차 청소년활동의 개념 이해 2주차 청소년활동의 역사적 배경 3주차 청소년활동의 주요 이론 4주차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역할 및 자질 5주차 청소년활동의 유형과 특성 6주차 청소년활동의 발전(과정) 7주차 청소년활동의 주요 영역 8주차 청소년활동 관련 법적 제도적 고찰 9주차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가치 10주차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11주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12주차 청소년활동의 실제(수련, 교류, 봉사) 13주차 청소년활동과 지역사회(학교 등) 연계 14주차 외국의 청소년활동 사례 15주차 청소년활동의 현황과 과제

검정 교과목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2,3급 공통)
과목개요	청소년활동을 위한 실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운영기술, 평가 등 프로그램 전 과정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다룬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청소년기관, 단체,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사례연구와 프로그램의 계획, 설계, 편성, 실행, 관리, 평가의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한다.
교수요목	1주차 청소년프로그램의 개념 이해 2주차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의 이해 3주차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의 이론 4주차 청소년프로그램개발의 통합모형 5주차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6주차 청소년프로그램 요구분석 7주차 청소년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설정 8주차 청소년프로그램의 설계 9주차 청소년프로그램 마케팅과 홍보 10주차 청소년프로그램의 실행 및 운영 11주차 청소년프로그램 평가 12주차 청소년프로그램 작성 및 사례 발표 1 13주차 청소년프로그램 작성 및 사례 발표 2 14주차 청소년프로그램 작성 및 사례 발표 3 15주차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방향과 과제에 관한 토론

검정 교과목	청소년지도방법론(2,3급 공통)
과목개요	청소년지도의 개념, 청소년지도방법의 개념, 청소년지도방법의 주요 영역, 청소년지도의 원리, 청소년지도방법론의 학문적 배경, 청소년의 대상별·집단별 지도방법, 청소년지도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집단역동 방법 등을 학습한다. 이를 통하여 대상별, 집단별 청소년에 대하여 실제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한다.
교수요목	1주차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청소년지도 내용 2주차 청소년지도방법의 의의와 원리 3주차 청소년지도방법론의 이해 4주차 청소년지도방법론의 기초이론 5주차 자율참여의 원리 6주차 심성개발원리 7주차 문제해결원리 8주차 체험학습원리 9주차 청소년지도 대상별 접근방법의 이해 10주차 개인중심 지도방법 11주차 집단중심 지도방법 12주차 청소년수련활동 지도방법 13주차 청소년문화활동지도(스포츠, 예술, 봉사, 놀이 등) 14주차 청소년교류활동지도 15주차 청소년지도방법의 과제와 전망

검정 교과목	청소년문화(2,3급 공통)
과목개요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청소년문화형성의 영역별 실태와 문제점 등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통해 문화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청소년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소년문화의 자생력을 배양·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다양한 청소년문화의 특징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을 문화의 방향을 진단하여 문화정책의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해 본다.
교수요목	1주차 사회와 문화, 청소년 2주차 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개념과 특징 3주차 청소년의 특징(가치관 등) 4주차 사회변동 속에서 청소년이 갖는 위상과 특징 5주차 청소년과 대중문화 6주차 청소년 사이버문화 7주차 청소년 성문화 8주차 청소년 여가(놀이)문화 9주차 청소년 의복문화 10주차 청소년 언어문화 11주차 청소년 (또래)집단문화 12주차 청소년 학교문화 13주차 청소년 비행문화 14주차 청소년의 문화양식(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 15주차 청소년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또한 청소년문제와 보호 교수요목 내용과 청소년복지 교수요목, 청소년문화에서의 비행문화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검정 교과목	청소년문제와 보호(2,3급 공통) 유사인정 교과목 : 청소년문제
과목개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청소년기의 확대에 따른 각종 청소년 문제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 분석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적절한 보호활동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문제와 보호관련 이론적 배경 및 청소년문제와 보호를 위한 영역별 다양한 청소년문제행동의 원인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적절한 보호활동을 위한 대안프로그램 등 대책과 예방에 대한 실재를 학습한다.
교수요목	1주차 청소년문제의 개념과 성격 2주차 청소년문제의 구조와 배경 3주차 청소년문제에 대한 개인중심 이론 4주차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환경 중심 이론 5주차 청소년 비행의 원인 및 실태 6주차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문제행동 7주차 학교폭력 8주차 청소년 흡연과 약물남용 9주차 청소년 가출 10주차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11주차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12주차 청소년 성문제 13주차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문제 14주차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대책 15주차 청소년보호 정책과 대안

검정 교과목	청소년복지(2급)
과목개요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고,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법, 정책, 행정들을 살펴본다. 또한 청소년복지의 실천영역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행동문제들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문화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고찰하고, 청소년복지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한다. 특히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와 참여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학습한다.
교수요목	1주차 청소년의 이해 2주차 청소년복지의 개념 3주차 청소년복지 이론과 발달과정 4주차 청소년복지 실천방법 5주차 청소년복지 관련법과 정책, 행정 6주차 가족과 청소년복지 7주차 학교와 청소년복지 8주차 지역사회와 청소년복지 9주차 성과 청소년복지 10주차 인권과 청소년복지 11주차 다문화청소년, 탈북청소년과 복지 12주차 장애 청소년복지 13주차 근로 청소년복지 14주차 특수한 사례의 청소년복지(외국인, 특수계층 등) 15주차 청소년복지의 과제와 전망

또한 청소년문제와 보호 교수요목 내용과 청소년복지 교수요목, 청소년문화에서의 비행문화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검정 교과목	청소년문제와 보호(2,3급 공통) 유사인정 교과목 : 청소년문제
과목개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청소년기의 확대에 따른 각종 청소년 문제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 분석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적절한 보호활동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문제와 보호관련 이론적 배경 및 청소년문제와 보호를 위한 영역별 다양한 청소년문제행동의 원인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적절한 보호활동을 위한 대안프로그램 등 대책과 예방에 대한 실재를 학습한다.
교수요목	1주차 청소년문제의 개념과 성격 2주차 청소년문제의 구조와 배경 3주차 청소년문제에 대한 개인중심 이론 4주차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환경 중심 이론 5주차 청소년 비행의 원인 및 실태 6주차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문제행동 7주차 학교폭력 8주차 청소년 흡연과 약물남용 9주차 청소년 가출 10주차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11주차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12주차 청소년 성문제 13주차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문제 14주차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대책 15주차 청소년보호 정책과 대안

검정 교과목	청소년복지(2급)
과목개요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고,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법,정책, 행정들을 살펴본다. 또한 청소년복지의 실천영역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행동문제들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문화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고찰하고, 청소년복지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한다. 특히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와 참여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학습한다.
교수요목	1주차 청소년의 이해 2주차 청소년복지의 개념 3주차 청소년복지 이론과 발달과정 4주차 청소년복지 실천방법 5주차 청소년복지 관련법과 정책, 행정 6주차 가족과 청소년복지 7주차 학교와 청소년복지 8주차 지역사회와 청소년복지 9주차 성과 청소년복지 10주차 인권과 청소년복지 11주차 다문화청소년, 탈북청소년과 복지 12주차 장애 청소년복지 13주차 근로 청소년복지 14주차 특수한 사례의 청소년복지(외국인, 특수계층 등) 15주차 청소년복지의 과제와 전망

(4) 현장실습의 의무화 문제

현장실습은 대학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이론, 원리 등을 실제 청소년활동 현장에 적용함과 동시에, 전문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경험해보고 훈련해가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실천적 지식과 기술,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유진이, 2012).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천중심의 전공 예를 들어 교육학, 보육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에서는 실습과정을 교육과정의 핵심이며, 최종 단계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실습시간과 기간, 장소, 실습방법, 평가기준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현장실습에 대한 규정이나 표준모델이 없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유진이, 2012; 김지연, 2012). 또한 청소년지도현장 실습은 2011년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인원 4,818명일 때 실습 가능 기관은 총 653개(수련관 176개, 수련원 176개, 문화의 집 215개, 특화시설 6개, 활동관련 여성가족부 등록 단체 약 80개, 기관 당 7명 담당 기준) 인 것으로 나타나 실습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필기시험 면제제도를 재검토 하자는 의견도 있다(박정식, 2012, p.78). 최근 사회복지에서는 각 실천현장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습기관 인증제를 통해 사회복지실습이 가능한 기관이 자발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표 IV-17 각 대학별 현장실습과목 커리큘럼

청소년관련 학과 개설대학	현장실습 과목 유무	현장실습 이수시간	과목이수구분	수강횟수	평가방식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	80시간*2회 (총160시간)	전공필수과목	2회	pass / non pass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	160시간*1회	기본이수과목	1회	상대평가
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	180시간*1회	전공필수과목	1회	상대평가

(5) 필기시험의 부활 문제

필기시험 부활에 관한 문제는 2005년 자격제도 개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쟁되는 이슈이다. 인간대상의 학문이라는 특성과 지도 및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적 개입 등으로 청소년학과 유사한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는 2013년 12월 말 현재 기준 68만명에 이르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이에 반해 청소년지도사는 3만명에 그치고 있어(유자격자만 3만여명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임)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이나 관련 법률 제·개정, 청소년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수립 등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무시험제로 현재 4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42학점을 취득하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급의 경우는 국가시험으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필수과목중에서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의 8과목만 채택하고 있다. 실천현장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필기시험의 부활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자격증과의 형평성 문제, 사회환경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필기시험의 부활은 보다 전략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면접시험제 문제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은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등을 주요 면접 내용으로 2급, 3급 시험응시자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응시자 3~5명씩 1조로 하여 3인의 면접위원이 채점) 형태로 진행된다. 단,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면접시험이 면제된다. 면접시험위원(3인)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받게 되면 합격한다. 그러나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필기와 면접시험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다음 1회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면접관의 판단 및 형평성에 관한 문제제기이다. 면접관의 주관적 가치와 철학, 판단이 각자 다른데 3~5분 가량의 짧은 구두면접으로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또 어떤 면접관은 다소 허용적일

수 있고 어떤 면접관은 엄격할 수 있으며 운에 따라 면접시험의 당락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능력에 대한 검증은 한, 두명이 아닌 3명의 오랜 경력 및 경험을 가진 공신력 있는 면접관이라는 부분,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의 평가를 비롯한 면접에서 제기 되는 일반적인 오류 문제라는 부분, 면접관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최측의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면접관끼리의 사전 논의, 면접 후 집단 토의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밖에 청소년지도사 면접예상 질문이 온·오프라인상에서 유출되고 있는 문제, 국가자격면접관임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경력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 실천현장의 면접전문가들이 학생 스터디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7) 보수교육의 문제

보수교육은 청소년기본법 제24조2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며 교육장소는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_충남 천안 소재)이다. 2014년 3~11월까지 총 12차수가 운영되고, 직급·대상별 5개 선택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2014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http://yworker.youth.go.kr>).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연간 8시간 이상(필수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또는 사회복지 실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을 교육받아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전체 8평점 중 최대 4평점까지 인정 가능하며, 나머지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수해야 한다(201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http://edu.welfare.net/>).

표 IV-1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

구분	영역
필수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선택영역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인권
	특별분야(사회복지분야 및 직종별 특성화 교육, 소진예방프로그램으로서 타 인접 학문 교육 등)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예: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하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에서는 간호사, 시설관리(전기, 기계, 건축, 소방, 조경 등), 영양사, 조리사(원), 운전원, 경비, 청소 등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사회복지사의 수강료는 교육 내용과 형식, 교육 대상자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1평점 당 6천원 이하로 책정하며 사이버교육 수강료는 1차시 당 5천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은 2년 20시간으로 1인당 74,900원, 전체 비용(149,800원)의 50% 수준 자부담이다.

또한 8시간의 집합교육 외 사이버교육 형태가 있어 교육자가 기관 및 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의 개발은 「사이버교육 승인 심사표」를 통해 엄격히 관리된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2박 3일 20시간으로 개인 보수교육 대상자 뿐 아니라 기관차원에서도 부담이 된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이제 1년 실시하였으며 2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처럼 교육평가체제를 견고히 하고 평가결과를 잘 분석하여 추후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지침에서 각 보수교육 과목의 개요, 교육목표, 교육내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에서는 실무자A : 기획역량향상, 실무자B : 소통역량향상, 실무자C : 사업지원역량강화, 실무자D : 진로활동운영역량향상 등으로 다소 추상적이며, 차별화되어 있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도

수요자 중심의 선택형이라기 보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 실제에서의 선택형이라 할지라도 3~4개의 프로그램으로만 제시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사이버교육 과정의 개발도 향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IV-19 사이버교육 승인 심사표

영역	소영역	항목기술	구분	필수 및 권장조건	최도판단근거		
					2점	1점	0점
1. 교수-학습개발	교수자	1) 담당 교수자의 전공영역이 학습콘텐츠에 적합한가?	필수	·담당교수자(학습콘텐츠 개발 책임자 포함)의 전공영역이 학습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있음	pass : 담당교수자(학습콘텐츠 개발 책임자 포함)의 전공영역이 학습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있음.		
		2) 담당 교수자가 사이버교육의 (개발)경험이 있는가?	권장	·사이버 교육 (개발)경험 유무	2회 이상	1회 이상	-
	학습내용의 적합성	1) 학습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가?	필수	·학습목표 제시	pass : 학습목표가 제시되어있음.		
		2) 학습내용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필수	·학습내용의 일관성 있음	pass : 학습내용의 일관성 있음		
		3)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적절한가?	권장	·학습내용에 적합한 난이도	학습내용이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기에 매우 적절함	학습내용이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기에 적절함	학습내용이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기에 부적절함
		4) 1차시당 제시되는 학습내용의 양이 적절한가?	권장	·1차시당 15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	30~40분	15분 미만 혹은 40분 이상	-
		5) 학습내용이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는가?	필수	·최근 2년내 개발 또는 개선된 콘텐츠	최근 1년내 개발된 콘텐츠	1년초과~2년이하 개발된 콘텐츠	-
	학습자료의 적합성	1) 학습자료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는가?	필수	·학습자료가 텍스트, 사진 등을 포함하여 풍부하게 구성되어있음	pass : 학습자료가 텍스트, 사진 등을 포함하여 풍부하게 구성되어있음		
		2) 학습자료의 출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가?	필수	·인용자료의 출처 명시 : 100 %	pass : 인용자료의 출처명시가 100% 분명함		
		3) 전문용어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있는가?	필수	·기본 전문용어 풀이 있음	pass : 기본 전문용어 풀이 있음(전용 메뉴, 부연설명 중 1개 이상)		
		4) 학습자료의 활용이 용이한가?	권장	1) 별도 프로그램 필요시 다운로드 가능 2) 자료 다운로드 가능 중 1개 이상	1), 2) 모두 충족	1), 2) 중 1개지만 충족	-

영역	소영역	항목기술	구분	필수 및 권장조건	최도판단근거		
					2점	1점	0점
1. 교수-학습개발	교수-학습 방법의 적합성	1) 반복학습이 가능한가?	필수	·반복학습 가능	pass : 반복학습 가능함		
		2) Tutor와 학습자간의 협력학습이 가능한가?	권장	1) 학습내용문의 2) 게시판(혹은 이메일상담) 중 1개 이상	1), 2) 중 2가지 충족	1), 2) 중 1개지만 충족	-
		3)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이 가능한가?	권장	1) 수강생 커뮤니티 공간 2) 게시판 중 1개 이상	1), 2) 중 2가지 충족	1), 2) 중 1개지만 충족	-
		4) 예시가 학습내용에 적절한가?	권장	·학습내용에 적합한 예시 : 5-6개	학습내용에 적합한 예시 : 5-6개 이상	학습내용에 적합한 예시 : 3-4개	학습내용에 적합한 예시 : 2개 이하
		5) 학습내용의 요약용 학습복습기 제공되고 있는가?	필수	·요약사이트 있음	pass : 요약사이트 있음		
		6) 학습주제 전달을 위해 사용된 멀티미디어 매체가 적절한가?	권장	·적절한 멀티미디어 매체가 있음	매우 적절한 멀티미디어 매체 있음	적절한 멀티미디어 매체 있음	멀티미디어매체가 부적절함
	학습과제 및 평가의 적합성	1) 학습 평가기준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필수	·학습 평가기준 및 방법의 수강생 공개	pass : 수강생에게 학습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있음		
		2) 학습자의 성적이 자동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권장	1) 자동평가시스템 2) 자동점수산출시스템 있음 중 1개 이상	1), 2) 중 2가지 충족	1), 2) 중 1개지만 충족	-
		3) 자기학습평가를 위한 시각적 자료 제시(예 : 평가자료표 등)가 가능한가?	필수	·평가자료표 있음	pass : 평가자료표 있음		
		4) 학습자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는가?	필수	·수강생 교육만족도 평가 실시 및 만족도 결과 공개	pass : 교육만족도 평가 실시 및 만족도 결과 공개		
	행정지원 서비스	1) 공지사항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있는가?	필수	·공지사항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pass : 공지사항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있는가?	필수	·이메일 상담창구 있음	pass : 이메일 상담창구 있음		
	학습지원 서비스	1)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적절한가?	권장	·프로그램 안내내용의 적절성 : 수강과목, 수강기간, 수강료, 평가, 강사프로필, 학습지원서비스에 대한 도움말 중 4가지	프로그램 안내 5가지 이상	4가지	4가지 미만
		2) 학습자에게 학습자료의 사전제공을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권장	1) 노트비 동영상, 2) 학습자료 제공 있음	1), 2) 중 2가지 충족	1), 2) 중 1개지만 충족	-

영역	소영역	항목기술	구분	필수 및 권장조건	척도판단근거		
					2점	1점	0점
3. 시스템 및 기술	가상교육 시스템	1) 사이버 교육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이 용이한가?	권장	1) 사이버 보수교육 실시간 홈페이지와의 연결성 2) 일반검색엔진에서 접속가능 중 1개 이상	1), 2) 중 2가지 충족	1), 2) 중 1개만 충족	-
		2) 학습도중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직원의 응대가 적절한가?	필수	·담당직원의 도움으로 24시간내 문제해결	pass: 담당직원의 도움으로 24시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3)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필수	·시스템 관리 전담인력	pass: 시스템 관리 전담인력 있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1) 학습자의 조작실수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가?	필수	·조작실수에 대한 수정가능	pass : 학습자의 조작실수에 대해 수정 가능함		
		2) 학습자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는가?	권장	·진행상황 확인장치 1종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장치 1종류 이상 있음	확인장치가 1개 있거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확인장치 없음
		3) 학습시 학습자의 위치이동이 용이한가?	필수	·위치이동 용이함	pass : 학습자의 위치이동 용이함		
		4) 화면에서 아이콘의 의미가 명확한가?	권장	·아이콘 의미가 명확하게 연상됨	매우 명확함	명확함	불명확함
계		총 3개 영역, 6개 소영역, 32개 항목	필수18 권장14				

< 평가 결과판정 >

구 분	항목수	결과 판정
필수항목	18개	pass / fail로 판정. 18개 항목별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pass임.
권장항목	14개	3점 척도(2점, 1점, 0점)이며, 총점은 28점 만점임.
결과 판정		18개 필수항목 모두 pass하고 권장항목 총점이 18점 이상이어야 인증됨.

2. 청소년 민간자격 제도의 쟁점과 발전과제

청소년 전문 인력의 역할과 책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요구된다. 청소년에 관한 모든 것을 적절히 해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의 급수에 따른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영역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내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와 더불어 시대변화에 주목하면서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추진방향

(1)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필요성

빠른 사회변화와 지식기반사회의 진입 등은 학력보다는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정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자격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자격체제의 구축을 위한 민간자격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서준호·윤여인, 2002).

기술의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빨라지고 노동시장의 유동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역량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신호기제(signal)로서의 자격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강순희, 2012). 전문화된 자격과정 이수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의미 있는 노후과정을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 전문 인력의 활용에 있어서도 청소년관련 자격과정을 통한 새로운 영역 찾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공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있으나 이는 모든 영역의 청소년관련 전문성을 담보한 다기 보다는 청소년관련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관련 국가자격이 있다고 하여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영역의 활동과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빠른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주목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며, 이는 결국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을 풍요롭게 하고 청소년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다양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2)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도입의 우려와 기대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침도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주무부인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현장의 민간자격 운영에 관한 교감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측면에서의 우려와 기대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향후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민간자격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와 기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역할과 위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관련학과(대학원)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으면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고, 청소년상담사 역시 시험과 연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1,2,3급을 구분하여 급수 간의 역할을 차별화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급수에 따른 역할을 차이보다는 청소년 전문 인력의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취득만으로 현장의 요구에 맞춘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도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지도사 이외에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자격 과정에 참여하여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이 활성화 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으며, 결국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위상이 약화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자격기본법에 의해 주무부인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를 공고하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의 금지분야는 동일명칭 사용 금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의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48호). 하지만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에서 금지분야 중 동일명칭 사용 금지 외에는 민간자격의 금지 분야와 허용 분야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자격기본법 17조 1항에서 금지분야 외에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의 적극적인 자격과정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주무부인 여성가족부에서는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타 부처의 경우 적극적으로 민간자격을 양성하는 것에 비해 현재 여성가족부는 매우 제한적으로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활동과 전문적 교육 참여의 기회는 확장될 것으로 보이나, 자칫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가계 부담의 핵심인 사교육 영역이 기존의 공교육 보완을 넘어서 자기개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가정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자격 제도가 활성화 된다고 하여 반드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고가의

민간자격 프로그램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 입시 관련 스펙으로 활용될 경우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시장이 과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이를 대한 기대 또한 높은 편이다.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를 정리해 보면 첫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을 통한 청소년관련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늘 존재한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를 자처하지만 결국 ‘청소년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움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인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이 있지만 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라면,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신뢰성은 민간자격을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자격 취득은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꾸준한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청소년전문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양성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청소년관련 분야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현재 청소년분야는 청소년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동안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고유 영역에 대한 집착으로 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호환성은 부족하였고, 청소년의 삶 전반에 관여하기 보다는 청소년활동이나 보호, 복지의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청소년 삶 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역에 대해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개발, 청소년진로 개발, 청소년 정치 및 시민성 개발, 청소년 복지와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부처와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영역 확장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의 영역과 더불어 타 분야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청소년관련 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으로 활동영역의 범위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탈학교 청소년의 경우 학교나 지역사회 모두 그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높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를 소유한 청소년전문가가 탈학교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격과정을 이수하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있게 된다.

셋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현재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청소년들 역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신의 꿈을 찾고 구체화 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게 된다. 이제 우리사회는 개개인별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진로뿐만 아니라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삶의 길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삶을 분석하여 이를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과정을 활성화 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순환 구조는 결국 빠른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력을 높여주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운영

(1)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방향

우리나라에 민간자격이 법률에 기반을 둔 제도로서 도입·운영된 것은 1997년 「자격기본법」의 제정 이후이다. 당시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정부중심, 즉 공급자 중심으로 관리·운영되어 온 국가자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자격 이외의 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 등을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통해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김덕기·김상진·박종성, 2013).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이는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에 의해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운영 된지 20여년 가까이 지났지만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경우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다양한 분야(교육, 복지, 문화 등)와의 복합적인 관계 그리고 청소년관련 환경의 빠른 변화 등의 이유로 민간자격 운영의 방향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는 높은 편이었으며, 다른 분야가 민간자격을 통해 전문성 확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보인 점에

주목한다면, 이제는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2013년 개정된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있어 사실상 임의로 자격과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시행령에서 주무부장관은 신청 받은 민간자격이 금지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자격 등록대장을 관리·보관하게 되어 있다. 이는 민간자격의 난립을 막고 질적인 관리를 국가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자격 등록제는 주무부의 정책방향과 의지에 따라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별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경우 대부분 교육지원이나 체험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교육 시장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2)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운영 기준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나 교육과정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영리적 성격의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과정을 확대할 경우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거의 모든 민간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우선 민간자격의 목적과 운영방향, 그리고 민간자격 등록 대상과 금지하고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어떠한 분야가 가능한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목적은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보호,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체험, 교육지원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소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자격제도의 확대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보다는 사교육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여 민간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운영방향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단체나 기관의 운영을 위한 수익 창출 위주의 자격제도는

지양해야 하며, 각 단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성장 또는 성인지도자를 포함한 관련 기반의 확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격제도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대변화에 주목하면서 향후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선제적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소년기로부터 핵심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대상은 우선 자격증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자격 과정의 주된 목적이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 그리고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청소년정책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부처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교육 및 개발을 목표로 하는 자격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청소년인성교육지도 관련 자격 같은 경우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인 여성가족부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모두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목적이나 목표가 학교 이외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지향할 경우 여성가족부가 적합할 것이며, 학교 교육의 보완이나 학교생활의 도움, 또는 교과과정과 연계된 자격과정이면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1차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고 해당 주무부로 심의를 요청하게 되지만, 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심의 여부를 판단하면 큰 문제없이 대상 선정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내용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먼저 현재의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향후 성인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진로역량에 관한 분야, 사회참여를 위한 분야, 시민성 확대를 위한 분야, 봉사활동이나 문화예술활동 등에 관한 영역을 지원하는 자격과정을 통해 전문 지도자 양성 및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량개발을 통한 자기성장 환경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나 복지를 위한 자격과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환경보호, 청소년지역자원개발, 청소년복지상담전문가 양성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성 확보가 목적이 된다면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자격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고 당초 계획된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격과정의 재등록 제도를 도입 하여 등록기간 동안 자격과정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사회적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청소년관련 자격으로 실제로 현장과의 연결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청소년정책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질적인 사후관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표 IV-20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운영기준

구분	내 용	비고
목적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보호,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체험, 교육지원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과 관련된 성인지도자 및 자원 개발 등을 위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과정의 관리 및 감독의 효율화	
운영 방향	* 청소년의 구체적인 성장 지원 * 시대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선제적 역량 개발 * 운영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량개발 및 인프라 확대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분야 인재 양성	
대상	* 자격증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된 민간자격 * 자격증 명칭에 청소년과 타 부처의 업무가 함께 표기된 경우 청소년정책의 근거하거나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을 목표로 할 경우 해당됨	
자격 범위	* 금지분야 이외에 청소년정책에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민간자격 * 청소년 개발 : 진로, 사회참여, 시민성, 봉사, 문화예술 활동 분야 등 * 청소년 복지보호 : 환경보호, 지역자원개발, 복지행정 분야 등	
사후 관리	* 자격과정의 사회적 신뢰성 유지 * 자격과정의 운영 확인을 위한 재등록 제도 도입 * 청소년정책과의 부합성 여부 확인	

3)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과제와 전망

(1)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추진과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인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제한적 허용에서 벗어나 청소년 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양성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관련 자격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관련 분야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세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시간적 절차에 따라 ‘민간자격의 등록’, ‘민간자격의 운영 지원’, ‘민간자격의 사후 관리’의 측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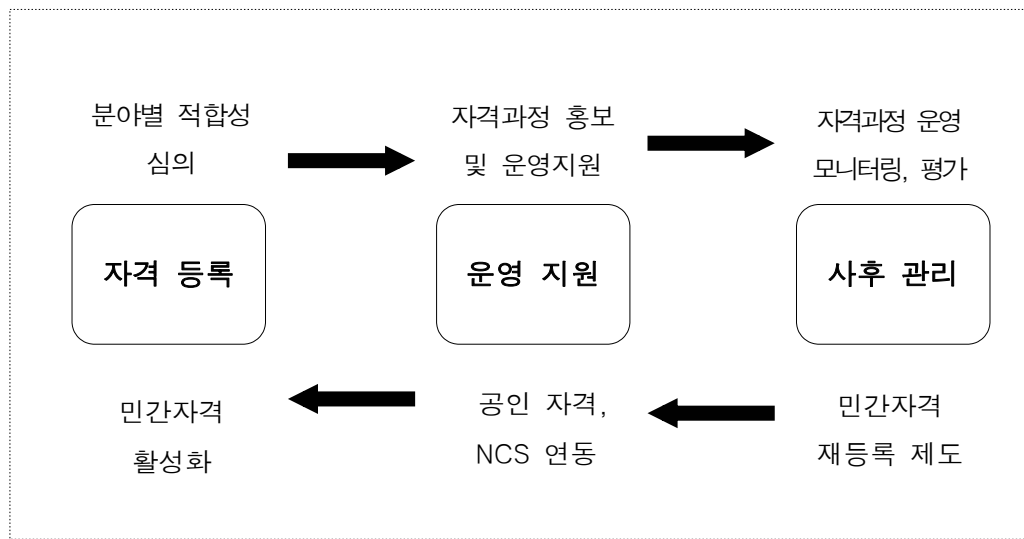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추진과제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등록 영역을 확대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민간기관에서 민간자격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면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해당 주무부의 장관에게 등록여부를 확인받은 후 민간자격으로 허가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무부에서 분야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주무부의 민간자격에 관한 정책방향에 따라 등록 여부가 판가를 나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자격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명확한 등록 기준이나 등록 과정에 대한 절차를 제시해 주면 민간자격 등록 및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등록 영역을 확대하고 상호 신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적합성을 심의하는 기준과 절차를 청소년 현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간 자격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심의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활성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민간자격 등록을 많이 한다고 하여 활성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방향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현장에서는 단순한 수익사업의 일환이 아닌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관의 정책성과 전문성을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등록된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4항에 의해 등록대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등록대장만 유지하는 것이 주무부의 주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주무부의 심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이 인정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이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라도 해당 부처의 등록자격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청소년정책의 확대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전달 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과정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환급과정으로의 운영 지원, 또는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등록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자격 중 의미 있는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자격기본법 제19조 1항에 의하면 ‘주무부 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인자격은 국가운영에 있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역할이 기대되는 자격과정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자격 과정 중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등록자격을 공인자격으로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의 자격과정과 청소년관련 등록 민간자격과의 연동도 고려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이다(http://www.ncs.go.kr/nos/dispatcher.jsp?p_menu=81). 현재는 주로 국가자격 위주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향후 민간자격 역시 국가직무표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자격과 공인자격이 국가직무표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등록된 민간자격의 지원과 더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사후관리도 중요한 과제이다. 민간자격의 경우 자율적으로 등록 당초 계획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예상되기 때문에 등록 민간자격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등록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재등록 여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다. 김덕기·김상진·박종성(2013)의 연구에서 민간자격 재등록제 도입을 제시한바 있다. 물론 민간자격 재등록제의 현장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자격과정을 총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나, 해당 자격과정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무부처와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주무부처에서 직접적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통보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자격기본법 제38조에서는 민간자격의 주무부처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직접 등록업무와 등록자격증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 IV-5】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운영 시스템

(2)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향후 전망

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선택하며, 새로운 도전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어 자신만의 꿈과 끼를 찾고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청소년기로부터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히 도전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입시공부의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자신의 진로를 힘들게 고민하고 있다. 미래의 불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장환경의 풍요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성장환경의 풍요화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전용 시설과 공간의 확대, 그리고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성인자원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빠른 시대변화와 청소년들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야 하며, 단순히 유행을 쫓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성장환경의 풍요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성인자원의 확대와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 교육의 보완을 넘어서 청소년기관들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새로운 형태의 전문 과정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청소년정책만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을 지원할 수 없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환경의 풍요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다양한 전문성이 청소년정책의 한 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현장의 전반적인 영역 확장, 그리고 더 나아가 내부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과정과의 균형 있는 운영의 문제, 청소년 관련 자격과정의 지나친 상업적 운영에 대한 우려, 청소년관련 자격시장의 과열과 사교육비 증가, 그리고 청소년관련 자격증의 남발로 인한 부정적 시각 확대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면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가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관련 민간자격과정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청소년 현장의 활성화와 역할 확대를 기대해 본다.

제 V 장

청소년관련 자격제도 실태조사

1. 청소년관련 자격제도 조사개요
2. 청소년관련 자격제도 조사결과
3. 조사결과 요약

제 V 장

청소년관련 자격제도 실태조사

1. 청소년관련 자격제도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점차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영역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증진을 위해 기존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의 개선방안과 청소년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 증진을 모색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청소년시설 종사자이며,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실태를 주요내용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설문도구를 구성하는 조사영역은 배경변인관련 영역 및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민간자격제도 영역 등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상기영역 중 배경변인 관련 영역은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지역, 기관유형, 근무연한, 직책 및 자격으로,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영역은 국가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민간자격제도 영역은 민간 자격증 보유정도, 종류, 민간자격증의 추가 필요도와 그 이유, 향후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 민간자격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와 운영 주체 등의 문항 등 전체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 방법

조사대상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 생활권(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및 자연권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
조사지역	전국
표 본 수	134명
표본추출	임의 유의표집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조사
조사기간	2014년 6월 9일 - 2014년 6월 13일
조사기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분석방법	전산화된 자료(Raw Data)는 통계패키지 SPSS for win과 Excel을 활용하여 분석

4) 응답자 특성

변인	구분	빈도(%)	계(%)	변인	구분	빈도(%)	계(%)
성별	남자	77(57.5)	134(100)	기관 유형	생활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61(45.5)	134(100)
	여자	57(42.5)			자연권 (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73(54.5)	
거주 지역	대도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18(13.4)	134(100)	직책	팀원(주임)	87(64.9)	134(100)
	중소도시	80(59.7)			팀장(과장)	25(18.7)	
	농어촌지역	36(26.9)			부장	18(13.4)	
					관장	4(3)	

※ 조사결과 분석을 위한 배경변인에 의한 집단 간 분류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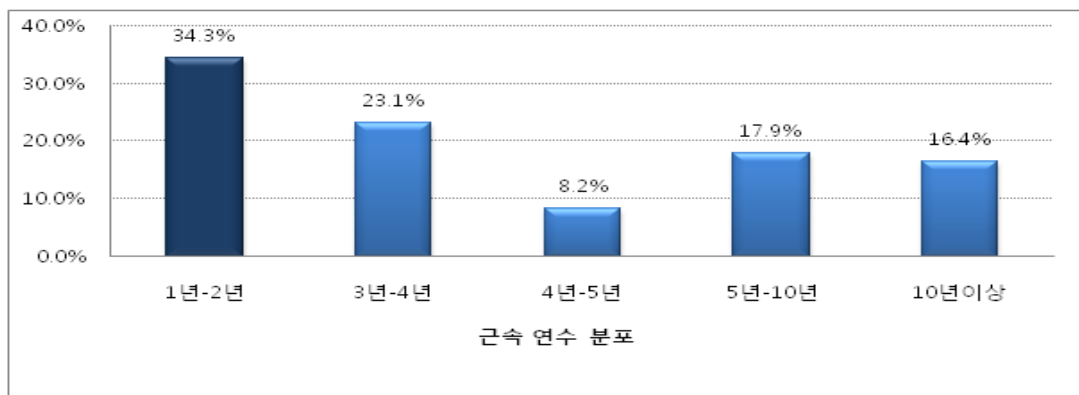
- 성별 분류: 남과 여
- 거주지역 : 대도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함.
- 기관유형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생활권,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 자연권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함.
- 직책: 팀원(주임), 팀장, 부장, 관장 4개 집단으로 분류함

2. 청소년관련 자격제도 조사결과

1) 해당 기관에 근무한 햇수

문) 귀하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Base: 전체응답자, N=134)

- 해당기관에 근무한 햇수의 경우 '1년-2년(34.3%)'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3년-4년(23.1%)', '5년-10년(17.9%)', '10년 이상(16.4%)', '4년-5년(8.2%)' 순으로 나타남.



【그림 V-1】 해당 기관에 근무한 햇수

표 V-1 해당 기관에 근무한 햇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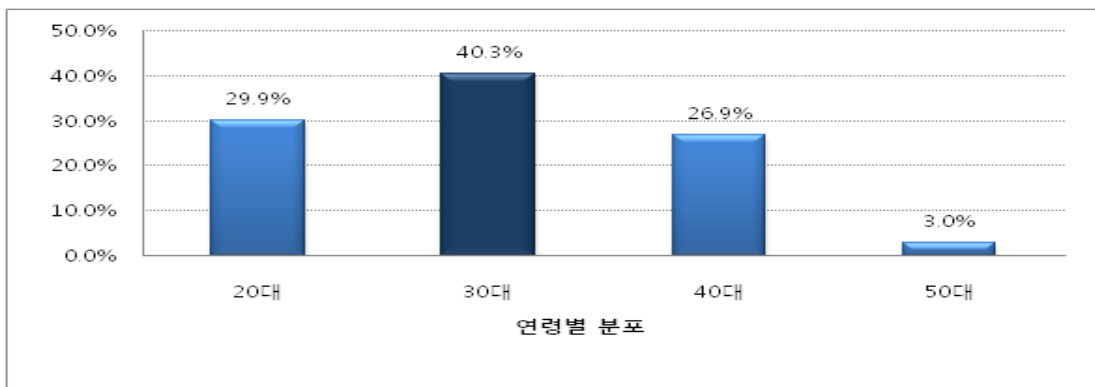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근속 연수					
		1~2년	3~4년	4~5년	5~10년	10년 이상	합계
전체		46(34.3)	31(23.1)	11(8.2)	24(17.9)	22(16.5)	134(100)
성별	남자	23(29.9)	15(19.5)	7(9.1)	12(15.5)	20(26.0)	77(100)
	여자	23(40.3)	16(28.1)	4(7.0)	12(21.1)	2(3.5)	57(100)
거주지역	대도시	4(22.2)	3(16.7)	1(5.6)	6(33.3)	4(22.2)	18(100)
	중소도시	31(38.8)	18(22.5)	6(7.5)	12(15.0)	13(16.2)	80(100)
	농어촌지역	11(30.6)	10(27.8)	4(11.1)	6(16.7)	5(13.8)	36(100)
기관유형	생활권	18(29.5)	15(24.6)	6(9.8)	15(24.6)	7(11.5)	61(100)
	자연권	28(38.4)	16(21.9)	5(6.8)	9(12.3)	15(20.6)	73(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38(43.7)	24(27.6)	7(8.0)	12(13.8)	6(6.9)	87(100)
	팀장(과장)	5(20.0)	5(20.0)	2(8.0)	9(36.0)	4(16.0)	25(100)
	부장	3(16.7)	2(11.1)	2(11.1)	3(16.7)	8(44.4)	18(100)
	관장	0(0)	0(0)	0(0)	0(0)	4(100)	4(100)

2) 연령별 분포

문)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Base: 전체응답자, N=134)

- 응답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대(40.3%)'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20대(29.9%)', 40대(26.9%)'과 '50대(3.0%)' 순으로 나타남.



【그림 V-2】 연령별 분포

표 V-2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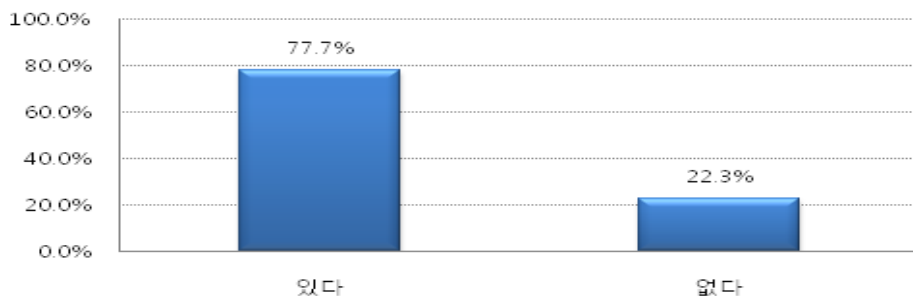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령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40(29.9)	54(40.2)	36(26.9)	4(3.0)	0(0)	134(100)
성별	남자	12(15.6)	32(41.5)	30(39.0)	3(3.9)	0(0)	77(100)
	여자	28(49.1)	22(38.6)	6(10.5)	1(1.8)	0(0)	57(100)
거주지역	대도시	4(22.2)	6(33.3)	7(38.9)	1(5.6)	0(0)	18(100)
	중소도시	30(37.5)	29(36.2)	19(23.8)	2(2.5)	0(0)	80(100)
	농어촌지역	6(16.7)	19(52.8)	10(27.7)	1(2.8)	0(0)	36(100)
기관유형	생활권	14(23.0)	27(44.2)	18(29.5)	2(3.3)	0(0)	61(100)
	자연권	26(35.6)	27(37.0)	18(24.7)	2(2.7)	0(0)	73(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39(44.8)	36(41.4)	12(13.8)	0(0)	0(0)	87(100)
	팀장(과장)	1(4.0)	12(48.0)	11(44.0)	1(4.0)	0(0)	25(100)
	부장	0(0)	5(27.8)	11(61.1)	2(11.1)	0(0)	18(100)
	관장	0(0)	1(25.0)	2(50.0)	1(25.0)	0(0)	4(100)

3)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

문) 현행 청소년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응답자, N=130)

○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응답에서는 '있다(77.7%)'가 높게 나타남.



【그림 V-3】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

표 V-3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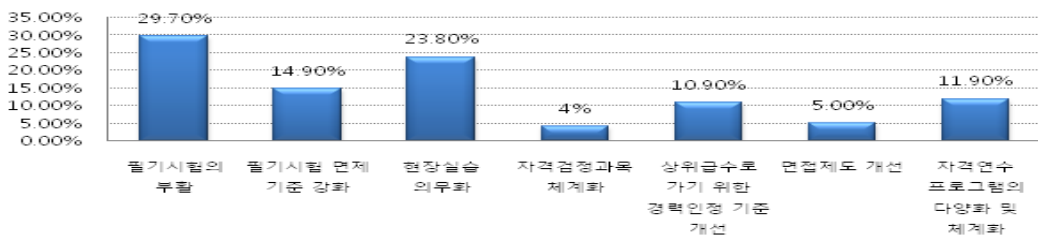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Q8 현행 청소년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	없다	합계
전체		101(77.7)	29(22.3)	130(100)
성별	남자	59(77.6)	17(22.4)	76(100)
	여자	42(77.8)	12(22.2)	54(100)
거주지역	대도시	16(88.9)	2(11.1)	18(100)
	중소도시	57(74.0)	20(26.0)	77(100)
	농어촌지역	28(80.0)	7(20.0)	35(100)
기관유형	생활권	50(83.3)	10(16.7)	60(100)
	자연권	51(72.9)	19(27.1)	70(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60(71.4)	24(28.6)	84(100)
	팀장(과장)	20(80.0)	5(20.0)	25(100)
	부장	17(100.0)	0(0)	18(100)
	관장	4(100)	0(0)	4(100)

4)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문) 현행 청소년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를 어떤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응답자, N=101)

- (1순위):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응답에서는 ‘필기시험의 부활(29.7%)’**이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현장실습 의무화(23.8%)’, ‘필기시험 면제 기준 강화(14.9%)’,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체계화(11.9%)’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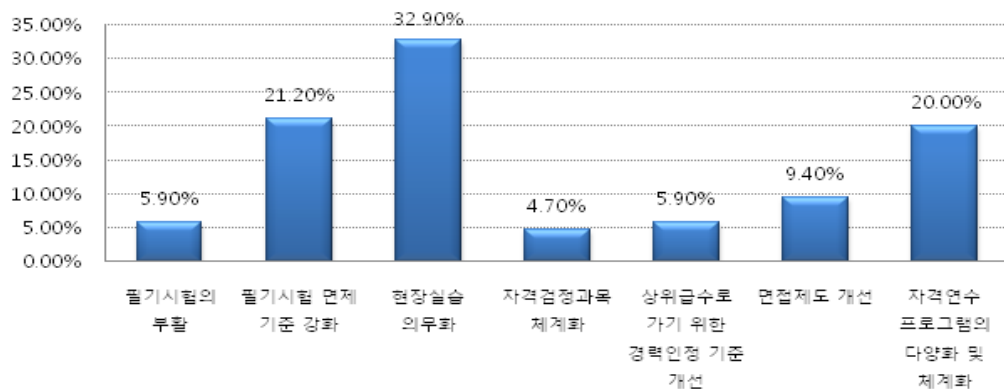
【그림 V-4】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1순위)

표 V-4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1순위)**

(단위: 명(%))

구분		Q9 어떤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필기시험 의 부활	필기시험 면제 기준강화	현장실습 의무화	자격검정 과목 체계화	상위급수 로 가기 위한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면접제도 개선	자격연수 프로그램 의 다양화 및 체계화	합계
전체		30(29.7)	15(14.9)	24(23.8)	4(4.0)	11(10.9)	5(5.0)	12(11.9)	101(100)
성별	남자	15(25.4)	9(15.3)	16(27.1)	2(3.4)	9(15.3)	2(3.4)	6(10.2)	59(100)
	여자	15(35.7)	6(14.3)	8(19.0)	2(4.8)	2(4.8)	3(7.1)	6(14.3)	42(100)
거주지역	대도시	6(37.5)	3(18.8)	6(37.5)	0(0)	1(6.2)	0(0)	0(0)	16(100)
	중소도시	16(28.1)	7(12.3)	9(15.8)	3(5.3)	7(12.3)	5(8.8)	10(17.5)	57(100)
	농어촌지역	8(28.6)	5(17.9)	9(32.1)	1(3.6)	3(10.7)	0(0)	2(7.1)	28(100)
기관유형	생활권	22(44.0)	10(20.0)	7(14.0)	2(4.0)	6(12.0)	2(4.0)	1(2.0)	50(100)
	자연권	8(15.7)	5(9.8)	17(33.3)	2(3.9)	5(9.8)	3(5.9)	11(21.6)	51(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17(28.3)	6(10.0)	15(25.0)	1(1.7)	6(10.0)	4(6.7)	11(18.3)	60(100)
	팀장(과장)	7(35.0)	5(25.0)	3(15.0)	1(5.0)	3(15.0)	1(5.0)	0(0)	20(100)
	부장	4(23.5)	4(23.5)	4(23.5)	2(11.8)	2(11.8)	0(0)	1(5.9)	17(100)
	관장	2(50.0)	0(0)	2(50.0)	0(0)	0(0)	0(0)	0(0)	4(100)

- (2순위):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응답에서는 ‘현장실습 의무화 (32.9%)’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필기시험 면제기준 강화(21.2%)’,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체계화(20.0%)’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5】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2순위)

표 V-5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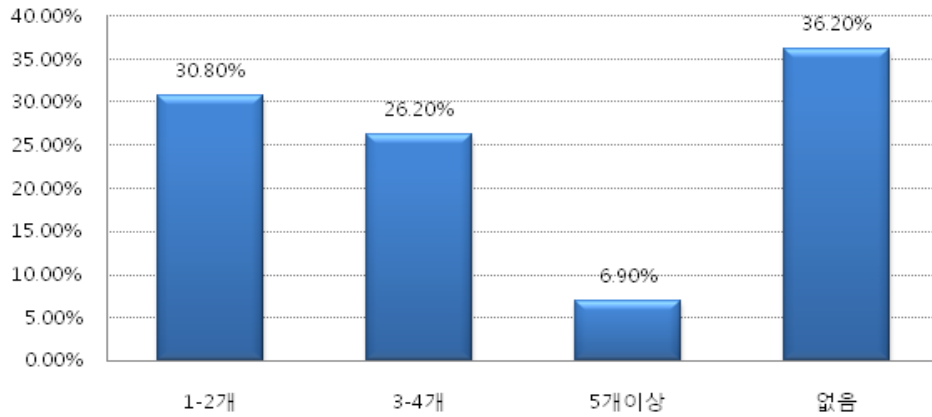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Q9 어떤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필기시험 의 부활	필기시험 면제 기준강화	현장실습 의무화	자격검정 과목 체계화	상위급수 로 가기 위한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면접제도 개선	자격연수 프로그램 의 다양화 및 체계화	합계
전체		5(5.9)	18(21.2)	28(32.9)	4(4.7)	5(5.9)	8(9.4)	17(20.0)	85(100)
성별	남자	4(8.0)	7(14.0)	18(36.0)	4(8.0)	3(6.0)	5(10.0)	9(18.0)	50(100)
	여자	1(2.9)	11(31.4)	10(28.6)	0(0)	2(5.7)	3(8.6)	8(22.9)	35(100)
거주지역	대도시	2(13.3)	4(26.7)	5(33.3)	1(6.7)	0(0)	0(0)	3(20.0)	15(100)
	중소도시	2(4.5)	11(25.0)	15(34.1)	3(6.8)	2(4.5)	4(9.1)	7(15.9)	44(100)
	농어촌지역	1(3.8)	3(11.5)	8(30.8)	0(0)	3(11.5)	4(15.4)	7(26.9)	26(100)
기관유형	생활권	3(7.0)	13(30.2)	14(32.6)	4(9.3)	2(4.7)	1(2.3)	6(14.0)	43(100)
	자연권	2(4.8)	5(11.9)	14(33.3)	0(0)	3(7.1)	7(16.7)	11(26.2)	42(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2(4.2)	12(25.0)	14(29.2)	2(4.2)	3(6.2)	4(8.3)	11(22.9)	48(100)
	팀장(과장)	2(11.1)	3(16.7)	6(33.3)	1(5.6)	2(11.1)	2(11.1)	2(11.1)	18(100)
	부장	1(6.7)	3(20.0)	7(46.7)	0(0)	0(0)	2(13.3)	2(13.3)	15(100)
	관장	0(0)	0(0)	1(25.0)	1(25.0)	0(0)	0(0)	2(50.0)	4(100)

5)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보유 현황

문)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이외에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Base: 전체응답자, N=130)

-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보유 현황에 관한 응답에서는 '없음(36.2%)'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1-2개(30.8%)', '3-4개(26.2%)', '5개 이상(6.9%)'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6】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보유 현황

표 V-6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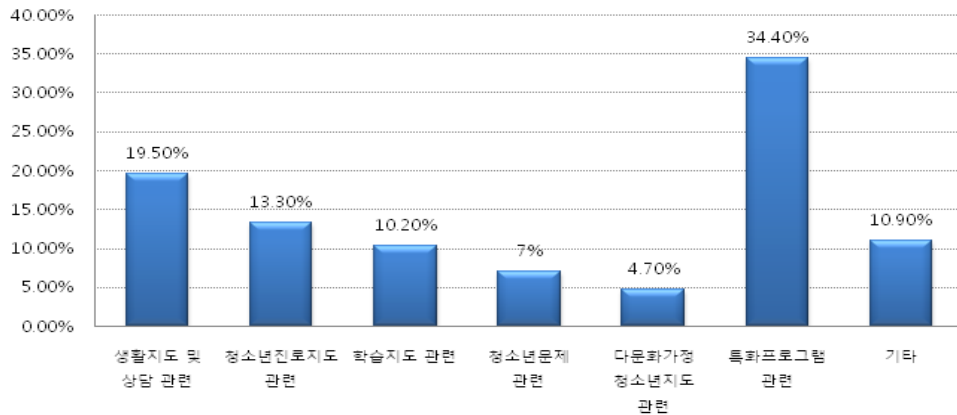
구분		Q10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이외에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1-2개	3-4개	5개 이상	없음	합계
전체		40(30.8)	34(26.2)	9(6.9)	47(36.2)	130(100)
성별	남자	21(27.6)	21(27.6)	7(9.2)	27(35.5)	76(100)
	여자	19(35.2)	13(24.1)	2(3.7)	20(37.0)	54(100)
거주지역	대도시	6(33.3)	6(33.3)	0(0)	6(33.3)	18(100)
	중소도시	24(31.2)	15(19.5)	6(7.8)	32(41.6)	77(100)
	농어촌지역	10(28.6)	13(37.1)	3(8.6)	9(25.7)	35(100)
기관유형	생활권	19(31.7)	18(30.0)	2(3.3)	21(35.0)	60(100)
	자연권	21(30.0)	16(22.9)	7(10.0)	26(37.1)	70(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22(26.2)	19(22.6)	4(4.8)	39(46.4)	84(100)
	팀장(과장)	10(40.0)	9(36.0)	0(0)	6(24.0)	25(100)
	부장	7(41.2)	6(35.3)	2(11.8)	2(11.8)	17(100)
	관장	1(25.0)	0(0)	3(75.0)	0(0)	4(100)

6)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의 종류

문) 어떤 종류의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Base: 전체응답자, N=128)

-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의 종류에 관한 응답에서는 '특화프로그램 관련(34.4%)'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생활지도 및 상담관련(19.5%)',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13.3%)'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7】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의 종류

표 V-7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의 종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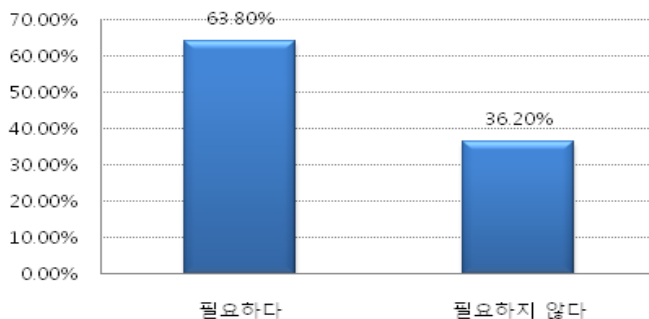
구분		Q11 어떤 종류의 청소년 관련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중복응답가능)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자격증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 자격증	학습지도 관련 자격증	학교폭력, 게임중독 등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자격증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도 관련 자격증	특화프로 그램 관련 자격증	기타
전체		25(19.5)	17(13.3)	13(10.2)	9(7.0)	6(4.7)	44(34.4)	14(10.9)
성별	남자	12(16.2)	8(10.8)	7(9.5)	5(6.8)	4(5.4)	32(43.2)	6(8.1)
	여자	13(24.1)	9(16.7)	6(11.1)	4(7.4)	2(3.7)	12(22.2)	8(14.8)

구분		Q11 어떤 종류의 청소년 관련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중복응답가능)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자격증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 자격증	학습지도 관련 자격증	학교폭력, 게임중독 등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자격증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도 관련 자격증	특화프로 그램 관련 자격증	기타	합계
거주지역	대도시	2(11.1)	3(16.7)	0(0)	2(11.1)	1(5.6)	7(38.9)	3(16.7)	18(100)
	중소도시	12(19.0)	8(12.7)	6(9.5)	3(4.8)	1(1.6)	24(38.1)	9(14.3)	63(49.2)
	농어촌지역	11(23.4)	6(12.8)	7(14.9)	4(8.5)	4(8.5)	13(27.7)	2(4.3)	47(100)
기관유형	생활권	12(21.1)	8(14.0)	6(10.5)	4(7.0)	2(3.5)	18(31.6)	7(12.3)	57(100)
	자연권	13(18.3)	9(12.7)	7(9.9)	5(7.0)	4(5.6)	26(36.6)	7(9.9)	71(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15(22.7)	7(10.6)	9(13.6)	4(6.1)	2(3.0)	21(31.8)	8(12.1)	66(100)
	팀장(과장)	6(17.6)	5(14.7)	2(5.9)	2(5.9)	4(11.8)	13(38.2)	2(5.9)	34(100)
	부장	2(11.1)	3(16.7)	1(5.6)	2(11.1)	0(0)	7(38.9)	3(16.7)	18(100)
	관장	2(20.0)	2(20.0)	1(10.0)	1(10.0)	0(0)	3(30.0)	1(10.0)	10(100)

7) 민간자격증 추가취득의 필요성

문) 청소년지도자에게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응답자, N=130)

○ 민간자격증 추가 취득의 필요성에 관한 응답에서는 '필요하다(63.8%)'가 높게 나타남.



【그림 V-8】 민간자격증 추가취득의 필요성

표 V-8 민간자격증 추가 취득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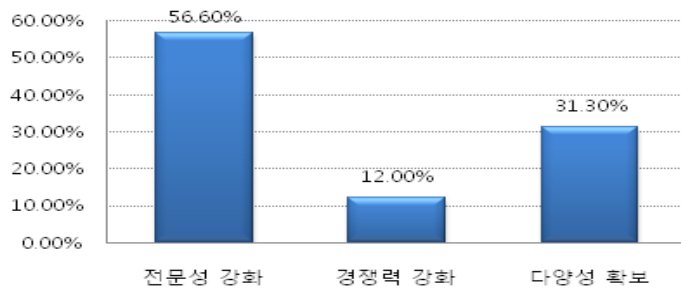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Q12 청소년지도자에게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합계
전체		83(63.8)	47(36.2)	130(100)
성별	남자	43(56.6)	33(43.3)	76(100)
	여자	40(74.1)	14(25.9)	54(100)
거주지역	대도시	11(61.1)	7(38.9)	18(100)
	중소도시	47(61.0)	30(39.0)	77(100)
	농어촌지역	25(71.4)	10(28.6)	35(100)
기관유형	생활권	38(63.3)	22(36.7)	60(100)
	자연권	45(64.3)	25(35.7)	70(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53(63.1)	31(36.9)	84(100)
	팀장(과장)	20(80.0)	5(20.0)	25(100)
	부장	8(47.1)	9(52.9)	17(100)
	관장	2(50.0)	2(50.0)	4(100)

8)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제도가 필요한 이유

문)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ase: 전체응답자, N=83)

- 민간자격증 추가 취득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응답에서는 '전문성 강화(56.6%)'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다양성 확보(31.3%)', '경쟁력 강화(12.0%)'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9】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제도가 필요한 이유

표 V-9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제도가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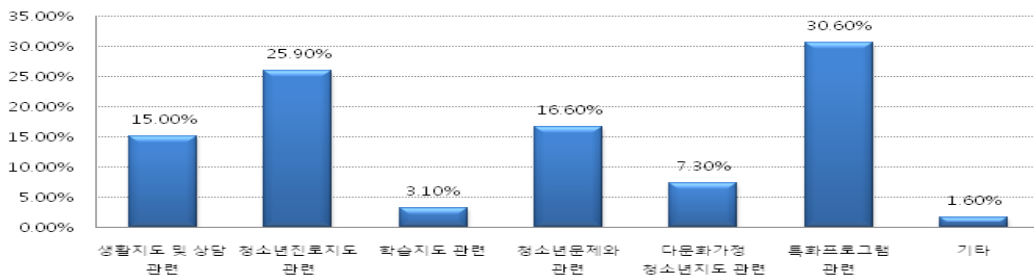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Q13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청소년지도자의 경쟁력 강화	청소년활동의 다양성 확보	합계
전체		47(56.6)	10(12.0)	26(31.3)	83(100)
성별	남자	22(51.2)	8(18.6)	13(30.2)	43(100)
	여자	25(62.5)	2(5.0)	13(32.5)	40(100)
거주지역	대도시	8(72.7)	1(9.1)	2(18.2)	11(100)
	중소도시	25(53.2)	6(12.8)	16(34.0)	47(100)
	농어촌지역	14(56.0)	3(12.0)	8(32.0)	25(100)
기관유형	생활권	26(68.4)	4(10.5)	8(21.1)	38(100)
	자연권	21(46.7)	6(13.3)	18(40.0)	45(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29(54.7)	6(11.3)	18(34.0)	53(100)
	팀장(과장)	12(60.0)	4(20.0)	4(20.0)	20(100)
	부장	4(50.0)	0(0)	4(50.0)	8(100)
	관장	2(100)	0(0)	0(0)	2(100)

9) 취득이 필요한 민간자격증의 종류

문) 어떤 종류의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응답자, N=134)

- 취득이 필요한 민간자격증의 종류에 관한 응답에서는 '특화프로그램 관련(30.6%)'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25.9%)', '청소년 문제 관련(16.6%)'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10】 취득이 필요한 민간자격증 종류

표 V-10 취득이 필요한 민간자격증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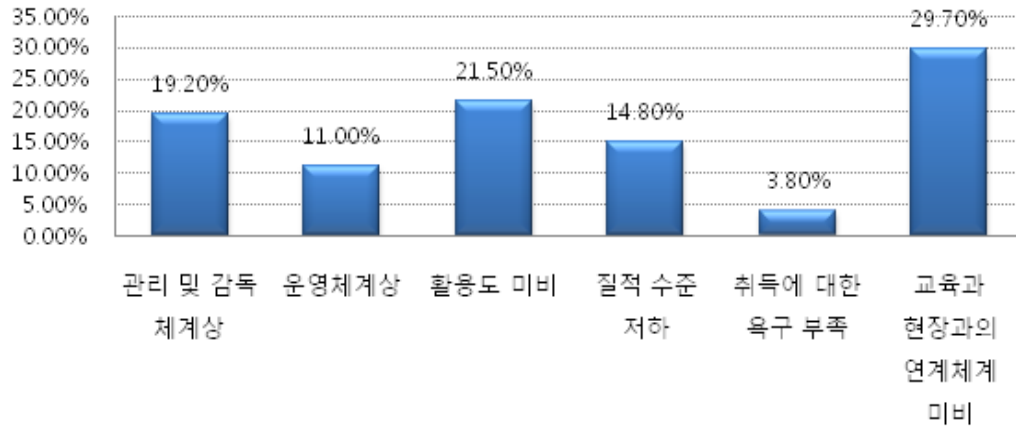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Q14 어떤 종류의 청소년 관련 민간자격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자격증	청소년진 로지도 자격증	학습지도 관련 자격증	학교폭력 게임중독 등의 청소년문제 와 관련 된 자격증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도 관련 자격증	특화프로 그램 관련 자격증	기타	합계
전체		29(15.0)	50(25.9)	6(3.1)	32(16.6)	14(7.3)	59(30.6)	3(1.6)	193(100)
성별	남자	16(14.3)	27(24.1)	5(4.5)	17(15.2)	8(7.1)	36(32.1)	3(2.7)	112(100)
	여자	13(16.0)	23(28.4)	1(1.2)	15(18.5)	6(7.4)	23(28.4)	0(0)	81(100)
거주지역	대도시	4(15.4)	10(38.5)	0(0)	4(15.4)	1(3.8)	7(26.9)	0(0)	26(100)
	중소도시	19(16.2)	28(23.9)	5(4.3)	20(17.1)	8(6.8)	36(30.8)	1(0.9)	117(100)
	농어촌지역	6(12.0)	12(24.0)	1(2.0)	8(16.0)	5(10.0)	16(32.0)	2(4.0)	50(100)
기관유형	생활권	16(16.5)	26(26.8)	2(2.1)	17(17.5)	7(7.2)	29(29.9)	0(0)	97(100)
	자연권	13(13.5)	24(25.0)	4(4.2)	15(15.6)	7(7.3)	30(31.2)	3(3.1)	96(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23(16.9)	35(25.7)	4(2.9)	23(16.9)	9(6.6)	41(30.1)	1(0.7)	136(100)
	팀장(과장)	1(3.8)	7(26.9)	0(0)	3(11.5)	1(3.8)	13(50.0)	1(3.8)	26(100)
	부장	4(20.0)	5(25.0)	1(5.0)	3(15.0)	2(10.0)	4(20.0)	1(5.0)	20(100)
	관장	1(9.1)	3(27.3)	1(9.1)	3(27.3)	2(18.2)	1(9.1)	0(0)	11(100)

10)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문)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Base: 전체응답자, N=134)

-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응답에서는 '교육과 현장과의 연계체계 미비(29.7%)'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활용도 미비(21.5%)', '관리 및 감독 체계상의 문제(19.2%)'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11】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표 V-11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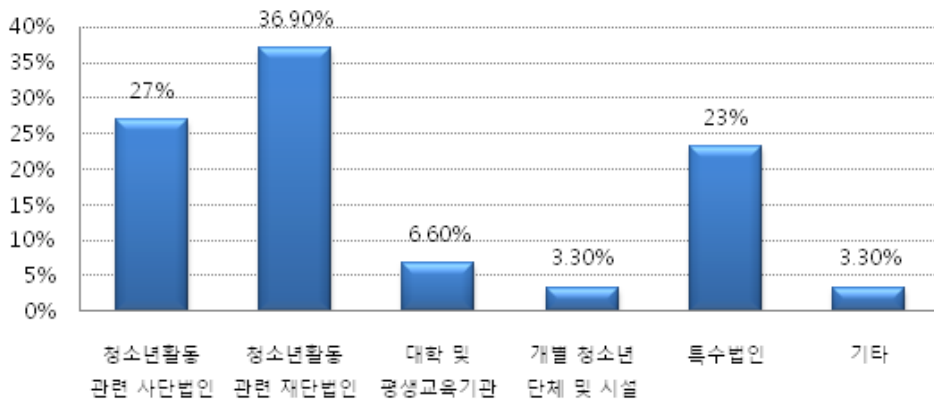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Q15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가능)						합계
		민간자격증의 관리 및 감독 체계상의 문제점	민간자격제도의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민간자격증의 활용도 미비	민간자격증의 질적 수준 저하	민간자격 취득에 대한 욕구 부족	교육과 현장과의 연계체계 미비	
전체		61(19.2)	35(11.0)	68(21.5)	47(14.8)	12(3.8)	94(29.7)	317(100)
성별	남자	32(17.4)	19(10.3)	46(25.0)	23(12.5)	8(4.3)	56(30.4)	184(100)
	여자	29(21.8)	16(12.0)	22(16.5)	24(18.0)	4(3.0)	38(28.6)	133(100)
거주지역	대도시	7(14.6)	5(10.4)	13(27.1)	7(14.6)	1(2.1)	15(31.2)	48(100)
	중소도시	35(18.7)	22(11.8)	38(22.3)	27(14.4)	8(4.3)	57(30.5)	187(100)
	농어촌지역	19(23.2)	8(9.8)	17(20.7)	13(15.9)	3(3.7)	22(26.8)	82(100)
기관유형	생활권	29(19.5)	18(12.1)	35(23.5)	21(14.1)	3(2.0)	43(28.9)	149(100)
	자연권	32(19.0)	17(10.1)	33(19.6)	26(15.5)	9(5.4)	51(30.4)	168(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42(20.4)	24(11.7)	40(19.4)	32(15.5)	10(4.9)	58(28.2)	206(100)
	팀장(과장)	10(16.9)	7(11.9)	15(25.4)	6(10.2)	0(0)	21(35.6)	59(100)
	부장	7(17.1)	2(4.9)	11(26.8)	7(17.1)	2(4.9)	12(29.3)	41(100)
	관장	2(18.2)	2(18.2)	2(18.2)	2(18.2)	0(0)	3(27.3)	11(100)

11)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의 관리 및 운영주체

문)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한다면 관리 및 운영주체는 어느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응답자, N=122)

-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 시 관리 및 운영주체에 관한 응답에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재단법인(36.9%)'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단법인(27.0%)', '특수법인(23.0%)'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12】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주체

표 V-12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주체

(단위: 명(%))

구분		Q16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한다면 관리 및 운영주체는 어느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활동 관련 사단법인	청소년활동 관련 재단법인	대학 및 평생교육 기관	개별 청소년 단체 및 시설	특수법인	기타
전체		33(27.0)	45(36.9)	8(6.6)	4(3.3)	28(23.0)	4(3.3)
성별	남자	21(29.6)	25(35.2)	3(4.2)	3(4.2)	16(22.5)	3(4.2)
	여자	12(23.5)	20(39.2)	5(9.8)	1(2.0)	12(23.5)	1(2.0)
거주지역	대도시	6(35.3)	5(29.4)	0(0)	2(11.8)	3(17.6)	1(5.9)
	중소도시	18(25.0)	26(36.1)	8(11.1)	1(1.4)	17(23.6)	2(2.8)
	농어촌지역	9(27.3)	14(42.4)	0(0)	1(3.0)	8(24.2)	1(3.0)

구분		Q16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한다면 관리 및 운영주체는 어느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활동 관련 사단법인	청소년활동 관련 재단법인	대학 및 평생교육 기관	개별 청소년 단체 및 시설	특수법인	기타	합계
기관유형	생활권	11(19.6)	22(39.3)	5(8.9)	3(5.4)	13(23.2)	2(3.6)	56(100)
	자연권	22(33.3)	23(34.8)	3(4.5)	1(1.5)	15(22.7)	2(3.0)	66(100)
기관직책	팀원(주임)	23(28.8)	23(28.8)	7(8.8)	3(3.8)	21(26.2)	3(3.8)	80(100)
	팀장(과장)	3(13.0)	15(65.2)	1(4.3)	1(4.3)	3(13.0)	0(0)	23(100)
	부장	6(40.0)	5(33.3)	0(0)	0(0)	3(20.0)	1(6.7)	15(100)
	관장	1(25.0)	2(50.0)	0(0)	0(0)	1(25.0)	0(0)	4(100)

3. 조사결과 요약

본 조사는 점차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영역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증진을 위해 기존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의 개선방안과 청소년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 증진을 모색할 목적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응답자의 배경변인관련 영역,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민간자격제도 영역 등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상기영역 중 배경변인 관련 영역은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지역, 기관유형, 근무연한, 직책 및 자격으로,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영역은 국가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민간자격제도 영역은 민간 자격증 보유정도, 종류, 민간자격증의 추가 필요도와 그 이유, 향후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 민간자격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와 운영 주체 등의 문항 등 전체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4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산화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for win과 Exc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로는 남자(57.5%), 여자(42.5%)이고,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13.4%), 중소도시

(59.7%), 농어촌지역(26.9%)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생활권 수련시설(45.5%), 자연권 수련시설(54.5%)이고 직책을 살펴보면 팀원(64.9%), 팀장(18.75), 부장(13.4%), 관장(3%)이고, 응답자의 근무기간은 '1년-2년(34.3%)', '3년-4년(23.1%)', '5년-10년(17.9%)', '10년 이상(16.4%)', '4년-5년(8.2%)'으로 나타났다.

주요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현행 국가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77.7%)'가 높게 나타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1순위 응답에서는 '필기시험의 부활(29.7%)'이, 2순위 응답에서는 '현장실습 의무화(3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없음(36.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1-2개(30.8%)'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의 종류는 '특화프로그램 관련(3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격증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필요하다(63.8%)'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36.2%를 차지함으로써 민간자격증 추가취득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민간자격증 추가취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전문성 강화(56.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다양성 확보(31.3%)'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민간자격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민간자격제도의 도입이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추가취득이 필요한 민간자격증의 종류는 '특화프로그램 관련(30.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25.9%)'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교육과 현장과의 연계체계 미비(29.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활용도 미비(21.5%)'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의 종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 도입 시 관리 및 운영주체에 관한 응답에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재단법인(36.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 VI 장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으로서의 자격제도 정책방향

1. 청소년국가자격제도 개선
2.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제 VI 장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으로서의 자격제도 정책방향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으로서의 국가자격제도 개선방안과 민간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국가자격제도 개선

1) 청소년국가자격제도 개선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청소년지도사 수급·배치·활용의 극대화 문제, 국가직무능력표준화 사업에 따른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문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교육과정상의 체계화 문제, 현장실습의 의무화 문제, 필기시험의 부활 문제, 면접시험제 문제, 보수교육의 문제’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사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기준을 잘 따르도록 시설평가 기준 상의 배점을 확대하거나 각 급수별 실제 직무 및 역할에 부합되는 자격 검정 과목의 추가 개설 혹은 과목 간 변경 조정 혹은 전면적인 과목 재검토 논의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필기시험 부활에 대한 의견과 현장실습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필기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타 국가자격증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장실습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라는 의견과 실습 가능 기관이 부족하고 규격화된 실습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청소년지도자들이 현행 국가자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필기시험을 부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과 현장실습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쟁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국가자격제도에서 고유활동과 전문 활동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의 현장과 이에 대한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유한 영역으로서의 청소년활동 뿐 아니라 해양환경체험활동, 농업생명활동, 우주체험활동이나 진로체험활동 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고, 이 분야를 청소년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문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어울림프로그램이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호루라기센터 등과 같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청소년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년국가자격제도를 고유 활동영역과 전문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이 고유영역에서의 전문성 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자격제도 검정과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1)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관련학과(대학원)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으면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고, 청소년상담사 역시 시험과 연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1,2,3급을 구분하여 급수 간의 역할을 차별화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급수에 따른 역할을 차이보다는 청소년 전문 인력의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취득만으로 현장의 요구에 맞춘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도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지도사 이외에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자격 과정에 참여하여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이 활성화 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결국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위상이 약화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민간자격의 등록 영역을 확대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민간기관에서 민간자격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면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해당 주무부의 장관에게 등록여부를 확인받은 후 민간자격으로 허가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무부에서 분야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주무부의 민간자격에 관한 정책방향에 따라 등록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자격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명확한 등록 기준이나 등록 과정에 대한 절차를 제시해 주면 민간자격 등록 및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등록 영역을 확대하고 상호 신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적합성을 심의하는 기준과 절차를 청소년 현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간 자격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심의회(가칭)’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의 활성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민간자격 등록을 많이 한다고 하여 활성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청소년관련 민간자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방향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현장에서는 단순한 수익사업의 일환이 아닌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관의 정책성과 전문성을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정과 청소년관련 등록 민간자격과의 연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민간자격 과정 중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등록자격을 공인자격으로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관련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자격과정과 청소년관련 등록 민간자격과의 연동도 고려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이다(http://www.ncs.go.kr/nos/dispatcher.jsp?p_menu=81). 현재는 주로 국가자격 위주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향후 민간자격 역시 국가직무표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자격과 공인자격이 국가직무표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활동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4) 민간자격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등록된 민간자격의 지원과 더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사후관리도 중요한 과제이다. 민간자격의 경우 등록 당초 계획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예상되기 때문에 등록 민간자격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등록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재등록 여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다.

김덕기·김상진·박종성(2013)의 연구에서 민간자격 재등록제 도입을 제시한바 있다. 물론 민간자격 재등록제의 현장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자격과정을 총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나, 해당 자격과정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무부처와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주무부처에서 직접적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통보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자격기본법 제38조에서는 민간자격의 주무부처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직접 등록업무와 등록자격증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5) 민간자격의 허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 자격기본법에 의해 주무부인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를 공고하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의 금지분야는 동일명칭 사용 금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의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48호). 하지만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에서 금지분야 중 동일명칭 사용 금지 외에는 민간자격의 금지 분야와 허용 분야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자격기본법 17조 1항에서 금지분야 외에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의 적극적인 자격과정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주무부인 여성가족부에서는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타 부처의 경우 적극적으로 민간자격을 양성하는 것에 비해 현재 여성가족부는 매우 제한적으로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6) 민간자격에 관한 현장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본 조사 결과, 청소년지도자들은 현행 국가자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자격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응답자 중의 상당수가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증 외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민간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일부 응답자만이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도자들은 대부분 특화프로그램에 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들도 마찬가지로 특화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에 관한 욕구가 높았다.

이처럼 청소년지도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증 이외에 특화프로그램 관련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한 예로 청소년지도자들은 교육과 현장과의 연계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고 민간자격제도의 관리 및 운영주체를 잘 선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청소년활동 관련 재단법인이 민간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7) 민간자격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민간자격의 경우에는 자격 종목만으로도 수천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질 관리가 어렵고 활용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등록자격 가운데 소양자격 외에 우수한 직업자격을 발굴하여, 공인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도 시장에 난립된 민간자격의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자격(등록 및 공인 포함)의 상당수가 청소년에게 소양이나, 기술 및 기능을 교육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해나 교육방법론 등이 시험과목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효적인 교육성과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대상의 지도 및 교육과 관련한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의 지도점검, 모니터링, 공인심사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자격검정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자율적 개선을 지도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역시 청소년 지도와 관련한 직무가 있을 경우, 검정과목, 출제기준, 출제 등에 반영되어 청소년교육과 지도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순희(2012). 국가개입과 사회적 합의 정도에 의한 국가 간 자격제도의 유형화. **산업노동연구**, 18(2), 213-242.
- 강순희, 김안국, 박성재, 김주섭, 김승택, 김덕호, 정주연, 박충렬(2003).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2003-11). 서울:한국노동연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보건의료질지표 생산 및 개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곽영숙·박순영(역자)(2008).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증진: 개념과 실제**. Mental health promotion and Young people, concepts and practice by Rowling, L., Martin, G., & Walker L. 도서출판 하나의학.
- 국립서울병원(2010). **한국의 정신보건 정책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210-02).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 권양이(2013).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박영사
- 김경준(2008)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 한국청소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5-51.
- 김덕기·김상진(2005). **일본의 자격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덕기, 김상진, 박종성(2013). **민간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 (기본연구 2013-24).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미숙·주인중·김덕기·오혁제(2012). **면허형 국가자격의 보수교육 실태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민석, 홍현숙, 김진학(2006).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개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2006-01). 국립서울병원.
- 김상진(2004). **자격검정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선민, 박춘선, 최보람, 김경훈, 정규원 외(2009) 2009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FA2-2009-113),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수진, 이정숙, 강혜영, 정향인, 최봉실, 권영란 (2008). 청소년정신건강검진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맞춤형 사례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정신건강 증진 확산모형 개발. (건강증진기금연구사업, 정책, 07-4). 광주: 전남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김윤 · 이명수 · 이선영 · 강상경 · 곽영숙 · 김경희 외 (2010).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011-2015) 수립. 서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김윤, 이선영, 오무경, 이은정, 강미영 (2009). 정신건강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연계체계 개발. 서울: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김창대, 오인수, 유현실, 이동혁, 이상민, 이영선 외 (2012), 다면적 성장잠재력 검사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반건호 (2010). 근거기반의 학교기반정신건강 증진 공동체모델 시범적용. 국립서울병원, 서울: 국립정신보건교육 · 연구센터.
-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2012) 2012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박종성 · 김현수(2004). 자격제도 관리 · 운영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제7권 제2호, 22-39.
- 박종성 · 김상진 · 김상호(2005). 민간자격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 · 김현수 · 김덕기 · 이영란 · 강정은(2008).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24-35.
- 박종성 · 이무춘(2005). 환경분야 자격이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 비경제적 효과 분석, 환경교육. 제18권 제1호, 55-69.
- 법제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별표7]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관련). 2014.05.22.
- 서준호, 윤여인 (2002).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 방안 (기본연구 02-22). 서울:직업능력개발원.
- 송인섭 (1996), 여학생의 성격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35, 63-84.
- 신명훈(2000). 자격제도 국제비교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명훈 · 김현수 · 박종성(2000).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동현, 김현정, 현미나, 김윤영, 이혜숙, 남동현 외(2008). 학생정신건강검진 시범운영사업 결과 및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 유진이, 윤혜순(2013).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양서원.
- 이광호(2000)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변화의 차별적 특성과 향후 양성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동임 · 주인중 · 김미숙 · 김상호 · 오혁제(2012). **국가자격의 정보 체계화 방안**,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이동임(2012). **2012년 자격제도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 민간자격운영 실태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 이동임 · 김미숙 · 김상호 · 오혁제 · 박영미 · 조현혜(2012). **2012 민간자격 통계연보**,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 이동임 · 김현수 · 이유진 · 조현혜(2013). **2013 공인민간자격 통계연보**,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교육부.
- 이선영(2013). 2013년 한국정신정보건사회복지학회 ‘지역사회정신건강 증진, 어디로 가야하나?’ 추
계학술대회 자료집, 2013.
- 이진석, 이선영, 김명정, 최혜원, 한혜민(2011). **학생정신건강관리 체계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충북교육청.
- 이춘화 · 김영한 · 박철웅 · 이상진(2008)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 연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현림 (2007).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전주용 · 오민홍 · 전재식 · 박광배(2013). **청년 노동시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정진욱, 이수형, 천재영, 김지은, 백종우, 서동우 (2010).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체계구축방
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태화 · 이정표 · 조정윤 · 김상진 · 박종성 · 박동열 · 김현수 · 양미란 · 박윤희 · 박태준 ·
김수원(1997).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 · 이정표 · 김상진 · 박동열 · 양미란 · 이은주(1998). **주요 국가의 자격 종목**,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차명호, 정경용, 정지현(2010). 전국 초, 중, 고학생의 위험행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17(3), 233-252.
- 천영민 · 황광훈 · 양수경 · 전병돈(2013). **청년패널 2007 6차(2012)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한국고용정보원.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2013). **2012년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청소년통계**.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한국심리학회, 22(2)**.
- 한국산업인력공단(2013). **2013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 한혜리, 송진희, 노성원(2010). **정신보건지표개발연구 : 일반 성인을 중심으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함병수김경준·서정아·정익재(2004)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홍강의(2003). 한국 소아·청소년정신의학: 과거, 현재, 미래,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대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4(2)**, 139~149.
- 국가직무능력표준, http://www.ncs.go.kr/nos/dispatcher.jsp?p_menu=81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pqi.or.kr>
- Erikson, E.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ergusson, David M., L. John Horwood, and Elizabeth M. Ridder. (2005). Partner violence and mental health outcomes in a New Zealand birth coh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5):1103-1119.
- Haavisto, A., Sourander, A., Multimaki, P., Parkkola, K., Santalahti, P., Helenius, H. et al.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18-year-old boys: a prospective 10-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3, 143-154.
- Hurtado M.P., Swift E.K., Corrigan J.M., des. (2001) *Committee on the National Quality Report on Health Care Delivery*, Board on Health Care Services. *Envisioning the National Health Care Quality Report*.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ies Press.
- Mason, C.A., Walker-Barnes, C.J., Tu, S., Simons, J., and Martinez-Arrue, R. (2004). Ethnic differences in the affective meaning of parental control behavior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5, 59–79.
- Maughan B, Rutter M. (1998).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antisocial behaviour from childhood to adult life. In: Ollendick TH, Prinz RJ (Ed.),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New York, Plenum.
- Mrazek, P. J., & Haggerty, R. J. (1994). Reducing risks for mental disorders: Frontier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Muñoz, Ricardo F.; Mrazek, Patricia J.; Haggerty, Robert J. (1996). Institute of Medicine report on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s: Summary and commentary. *American Psychologist*, Vol 51(11), Nov 1996, 1116–1122. NASMHPD.org.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cited 2009, may 15]]. Available from: <http://www.nasmhpd.org/>.
- Owens PL., Hoagwood K., Horwitz SM., Leaf PL., Poduska JM., & Kellam SG. (2002). Barriers to children's mental health service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1, 731–738.
- Performance assessment 2008/2009 Mental health trust indicators[homepage on the internet]. Care Quality Commission[updated April 29th 2009; cited 2009 Sept 4]. Available from: <http://www.cqc.org.uk>.
- Resnick, M. D., Bearman, P. S., Blum, R. W., Bauman, K. E., Harris, K. M., Jones, J., Trish Beuhring, J. T., Sieving, R. E., Shew, M., Ireland, M., Bearinger, L. H., & Udry, J. R. (1997),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10), 823–832.
- Robins, L. N. (1991). Conduct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193–212.
- Rowling, L., Martine, G., & Walker, L. (2008).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증진: 개념과

- 실제. (곽영숙, 박순영 공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서출판 2001).
- Rutter, M., & Smith, D. J. (1995). Psychosocial disorders in young people: Time, trends, and their causes. Chichester: Wiley.
- Sourander A., Multimaki P., Nikolakaros G., Haavisto A., Ristkari T., & Helenius H. (2005). Childhood predictors of psychiatric disorders among boys: a prospective community-based follow up study from age 8 years to early adulthood.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4. 756-767.
- Steinhausen, H. C., Meier, M., & Angst, J. (1998). The Zurich long-term outcome stud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disorders in males. *Psychological Medicine*, 28(2), 375-383.
- WHO (2000). Local Action: Creating Health-promoting Schools.
- WHO (2001). Mental health policy project.
- WHO (2003). Investing in Mental health.
- Children of parents with a Mental Illness Home page, <http://www.copmi.net.au>
- Care Quality Commission Home page, <http://www.cqc.org.uk/>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Mental Health Program Directors Home page, <http://www.nasmhpd.org/>
- World Health Organization home page,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20/en/>
- Young Mind Homege, <http://www.youngminds.org.uk/>

.....

부록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연구와 의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점차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영역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증진을 위해 기존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 개선방안과 그 외의 청소년 민간자격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향후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5.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연구자 모상현 박사 ☎ 02-6193-8916 e-mail: monitor@nypi.re.kr	
---	--	--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귀하가 근무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농어촌 ⑤ 기타()

4. 귀하가 근무하시는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수련관 ② 청소년문화의집 ③ 청소년단체 ④ 청소년수련원
⑤ 유스호스텔 ⑥ 청소년야영장

5. 귀하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2년 ② 3년-4년 ③ 4년-5년 ④ 5년 - 10년 ⑤ 10년 이상

6. 귀하는 해당 기관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 ① 팀원(주임) ② 팀장 ③ 부장 ④ 관장

7. 귀하는 청소년 관련 국가자격증(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1급 청소년지도사 ② 2급 청소년지도사 ③ 3급 청소년지도사 ④ 없음

※ 8번부터 9번까지의 문항은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현행 청소년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다(9번으로 가시오) ② 없다(10번으로 가시오)

9. 어떤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필기시험 부활
② 필기시험 면제자 기준 강화(자격검정과목 이수자가 아닌 청소년관련학과 전공자 면제로 변경)
③ 현장실습 의무화
④ 자격검정과목 체계화
⑤ 상위급수로 가기 위한 경력인정 기준 강화
⑥ 면접제도 개선(면접질문문항의 표준화, 면접위원 전문성 확보 등)
⑦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체계화
⑧ 기타()

※ 10번부터의 문항은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이외에 청소년활동 관련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1-2개 ② 3-4개 ③ 5개 이상 ④ 없음

-> ①, ②, ③번 응답시: 11번으로 가시오.

-> ④번 응답시: 12번으로 가시오.

11. 어떤 종류의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생활지도 및 상담(초급수준) 관련 자격증
② 청소년진로지도 관련 자격증
③ 학습지도 관련 자격증
④ 학교폭력, 게임중독 등의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자격증
⑤ 다문화가정 청소년지도 관련 자격증
⑥ 특화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예. 스포츠, 인권, 환경 등의 교육 관련)
⑦ 기타()

12. 청소년지도자에게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13번으로 가시오)
② 필요하지 않다(14번으로 가시오)

13.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② 청소년지도자의 경쟁력 강화
③ 청소년활동의 다양성 확보
④ 기타()

14. 어떤 종류의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생활지도 및 상담(초급수준) 관련 자격증
② 청소년진로지도 관련 자격증
③ 학습지도 관련 자격증

- ④ 학교폭력, 게임중독 등의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자격증
- ⑤ 다문화가정 청소년지도 관련 자격증
- ⑥ 특화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예. 스포츠, 인권, 환경 등의 교육 관련)
- ⑦ 기타()

15.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체제 미비
- ② 민간자격 취득에 대한 욕구 부족
- ③ 교육과 현장과의 연계체계 미비(현장에서 요구되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합의 부족)
- ④ 민간자격증의 활용도 미비
- ⑤ 검정절차 미비
- ⑥ 기타()

16. 청소년활동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한다면 관리 및 운영주체는 어느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활동 관련 사단법인
- ② 청소년활동 관련 재단법인
- ③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 ④ 개별 청소년 단체 및 시설
- ⑤ 특수법인(신설이 필요함)
- ⑥ 기타()

17. 귀하가 생각하시는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적어주세요.

1) 국가자격제도(청소년지도사) 개선방안

2) 민간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보고 14-R22

청소년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인 쇄 2014년 7월 31일

발 행 2014년 7월 31일

발행인 노 혁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 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집필진

김 상 호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 윤 나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 남 익 교수 (광운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연구보고 14-R22

청소년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인 쇄 2014년 7월 31일

발 행 2014년 7월 31일

발행인 노 혁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 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